

'2027 EBS 수능특강 비문학 분석 시리즈'

D E C O D E · 무 료 배 포 본

EBS 수능특강 독서

보고 가자

읽기에서 분석으로

수록 분량 · 사회 · 문화 영역 21편

노란양말

사람과 사회,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다

	수 능 특 강	본 책
01 매디슨의 공화정 이론	p. 157	173
02 시민 불복종	p. 265	177
03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p. 144	181
04 법의 유추 해석과 유비 추론	p. 269	185
05 착오 송금과 법적 처리	p. 127	189
06 혼인의 법적 요건과 효력	p. 132	193
07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회피	p. 243	197
08 법인세 제도와 감가상각	p. 304	201
09 법적 의제	p. 162	205
10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	p. 262	209
11 토지 행정과 국토 이용 규제	p. 136	213
12 행정 대집행 제도	p. 118	217
13 특별 공공 행정 조직	p. 140	221
14 소비 함수와 소비 이론	p. 21	225
15 거시경제 모형의 발전	p. 122	229
16 복잡계 경제학	p. 48	233
17 교류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	p. 149	237
18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	p. 109	241
19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도덕적 해이	p. 114	245
20 조선 시대 신분 제도와 백정	p. 38	249
21 롤스 정의론	p. 25	253

P A R T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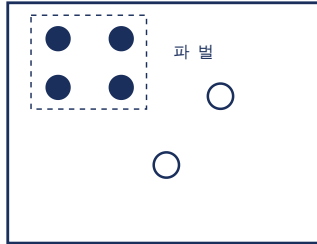
사회 · 문화

사람과 사회,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다

사회·문화 1강

순수 민주정

작은 영토, 직접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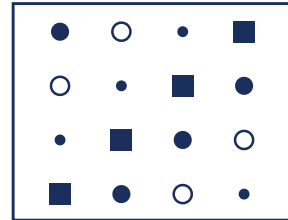


소수 권리 침해

다수가 곧 파벌이 된다

확장된 공화정

큰 영토, 대의제



다양한 이익이 서로 견제

어느 집단도 절대 다수가 안 된다

작은 공화국이 안전한가, 큰 공화국이 안전한가

매디슨의 공화정 이론

다수의 횡포를 막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56	영역	사회·문화 / 정치사상·헌법
주제	파벌, 순수 민주정 비판, 공화정과 대의제, 확장된 공화정, 권력 분립	연계	같은 단원집 9강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루소·밀·페이트먼·하버마스) - 정반대 자세



다수가 자기 이익만 좇아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01

파벌의 자리와 두 갈래 해법

자유 의 부산물, 그리고 매디슨의 선택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다. 다수가 자기 이익만 좇아 소수의 권리를 짓밟으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폭력이다.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다수가 한 파벌이 되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정교한 답을 내놓은 사상가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매디슨이다. 2027 수능특강 사회·문화 1강이 그의 공화정 이론을 다룬다. 같은 단원집 9강(루소·밀·페이트먼·하버마스의 시민 참여 이론)과 정반대 자세에 서 있어, 두 단원을 묶으면 외적 준거 비교 문항에 대비할 수 있다.

§ 01 매디슨과 파벌 — 자유의 부산물 CORE PROBLEM

매디슨(J. Madison, 1751~1836)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며 1787년 미국 헌법의 주요 기초자다. 헌법 비준을 위해 1787~1788년에 발표한 「연방주의자 논고」 제10편과 제51편이 본 단원의 핵심 텍스트다. 그가 정의한 **파벌**(faction)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다. 다수든 소수든 일정한 시민의 집단으로,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 전체의 영구적 이익에 반하는 정념이나 이익에 따라 연합하고 행동하는 자리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 좇아 공동체의 공익을 해치는 집단이 파벌이다. 정당이 정책 대안을 두고 경쟁한다면, 파벌은 그 경쟁이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른 자리다.

매디슨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여기에 있다. **파벌은 자유의 부산물이다.** 시민에게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기 의견과 이익에 따라 자유롭게 모인다. 그 자유의 자리 위에서 파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파벌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더 깊은 원인은 **재산의 다양하고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 어떤 사람은 토지로, 어떤 사람은 상공업으로, 어떤 사람은 금융으로 재산을 형성한다. 그 차이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파벌의 토대가 된다.

§ 02 두 해법 — 원인 제거 vs 결과 통제 CHOICE

파벌을 어떻게 막을까. 매디슨은 두 길을 정리한 뒤 한쪽을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 길은 **원인을 제거**하는 길이다. 자유 자체를 없애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똑같이 만들어 파벌의 토대를 없애는 자세다. 매디슨은 이 길을 "병보다 나쁜 치료"라며 거부한다. 자유를 없애면 파벌도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는 자유 없는 폭정만 남는다. 둘째 길은 **결과를 통제**하는 길이다. 파벌이 생기는 일은 그대로 두되, 파벌이 공동체를 해치는 효과를 제도 장치로 막는 자세다. 매디슨이 선택한 길이다. 그 장치가 곧 대의제, 확장된 공화정, 권력 분립이다.

첫째 길 — 거부

원인 제거
자유 박탈 · 의견 통일

파벌이 자유의 부산물이라면 자유를 없애 토대를 없앤다. 그러나 자유 없는 폭정만 남는다. 의견을 똑같이 만드는 일도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병보다 나쁜 치료"다.

둘째 길 — 채택

결과 통제
제도 장치로 효과 차단

파벌의 발생은 막지 않는다. 다만 파벌이 공동체를 해치는 효과를 제도 장치로 막는다. 그 장치가 **대의제 + 확장된 공화정 + 권력 분립**이라는 세 겹의 그물망이다.

02

대의제와 확장된 공화정

시민 의견의 정련, 그리고 큰 공화국의 역할

§ 03 순수 민주정 비판과 대의제 옹호 REPRESENTATION

매디슨은 **순수 민주정**(pure democracy), 곧 시민이 모두 모여 직접 결정하는 자세를 비판한다. 작은 사회에서만 가능한데, 그 안에서 다수가 곧 파벌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진단이다. 세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시민이 모두 직접 결정하므로 다수의 정념이 그대로 결정에 반영된다. 토론은 짧고 결정은 빠르며, 다수의 일시적 감정에 휘둘린다. 둘째, 작은 사회에서는 다수가 한 파벌을 형성하기 쉽다. 다수가 한 방향으로 뭉치면 소수의 권리는 곧바로 침해된다. 셋째, 다수의 결정이 공익이 아닌 다수의 사익을 위한 결정이 되기 쉽다. 매디슨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민주정이 단명한 까닭이 바로 이 폐해에 있다고 보았다.

매디슨이 옹호하는 자리는 **공화정**(republic)이다. 시민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선출된 대표가 통치하는 자세, 곧 **대의제**다. 단순히 왕이 없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시민 주권의 행사라는 결을 가진다. 대의제의 장점은 둘이다. 첫째, 시민의 의견이 대표를 통해 **정련된다**(refine and enlarge). 선출된 대표는 시민의 즉흥적 정념을 그대로 결정에 옮기지 않고, 토론과 숙고를 거쳐 더 합리적인 자리로 다듬는다. 둘째, 대표를 통한 통치는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 이 두 번째 장점이 확장된 공화정의 자세로 이어진다.

매디슨이 거부한 자리

순수 민주정
시민이 모두 직접 결정

다수의 정념이 그대로 결정에 반영되므로 일시적 감정에 휘둘린다. 작은 사회에서는 다수가 곧 파벌이 되며, 다수의 결정이 공익이 아닌 다수의 사익이 되기 쉽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단명한 까닭이다.

매디슨이 옹호한 자리

공화정 (대의제)
선출된 대표가 통치

시민의 의견이 대표를 거치며 더 합리적인 자리로 정련된다(refine and enlarge). 토론과 숙고가 즉흥적 정념을 거른다. 또한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릴 수 있어 확장된 공화정으로 이어진다.

§ 04 확장된 공화정 — 큰 게 더 안전하다 PARADOX

당시 일반 견해는 공화국이 작아야 잘 작동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공화국에서만 시민이 서로의 사정을 알고 공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매디슨은 이 견해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확장된 공화정**(extended republic)이 작은 공화정보다 파벌의 폐해에 덜 취약하다는 자세다. 근거는 둘이다.

확장된 공화정의 두 안전장치

근거	핵심 작동 방식
① 다양한 이익	넓은 영토 안에 농부·상인·노동자·자본가의 이해관계가 공존하여 어느 한 집단도 절대 다수가 되기 어렵다
② 결집의 어려움	거리가 멀고 정보 흐름이 느리므로 한 파벌이 전국적 다수로 뭉치기 어렵다, 한 지역의 다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소수가 된다

이 논리에서 매디슨의 정치적 결론이 나온다. 13개 주가 따로따로 작은 공화국으로 운영되기보다 **하나의 큰 연방 공화국**으로 합쳐지는 편이 파벌 문제를 훨씬 잘 막을 수 있다는 것. 매디슨의 확장된 공화정 이론은 곧 미국 연방의 정당화 논리였다.

03

권력 분립과 9강 시민 참여 이론

야망에는 야망으로, 그리고 정반대 자세

§ 05 권력 분립 — 야망에는 야망으로

CHECKS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편에서 매디슨은 정부 내부의 **권력 분립**을 옹호한다.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한 부서도 압도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세다. 매디슨이 설계한 분립은 두 층위로 이뤄진다. 첫째, 연방 차원에서 입법 · 행정 · 사법이 서로 견제한다. 둘째, **연방과 주(州) 사이의 권력 분할**이 또 한 층의 견제를 만든다. 시민의 권리는 이 **이중 분립**의 두 층 모두에서 보호된다. 어느 한 자리에서 권력이 폭주해도 다른 자리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입법부 안에서 양원제(상원과 하원)가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사법부의 위헌 심사권이 입법부의 결정을 헌법의 자리에서 다시 점검하는 중간적 권력으로 자리한다.

권력 분립의 핵심 명제 — 제임스 매디슨,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편 (1788)

야망에는 야망으로 맞서야 한다. 한 사람의 이익이 그 자리에 부착된 헌법적 권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흐름은 이렇다. **자유 보장 → 파벌의 발생(필연) → 결과 통제의 선택 → 대의제(시민 의견 정련) + 확장된 공화정 (다양한 이익 견제) + 권력 분립(야망에는 야망) → 시민의 권리 보호**. 평가원 함정 단골 넷이다. "매디슨은 파벌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틀림—자유는 부산물이라 발생은 못 막는다), "매디슨은 작은 공화국이 큰 공화국보다 안전하다고 보았다"(틀림—정반대), "매디슨은 자유를 없애 파벌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틀림—병보다 나쁜 치료), "매디슨은 순수 민주정이 공화정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틀림—정반대).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매디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 「연방주의자 논고」 제10·51편의 핵심 사상가
- 02 **파벌**
자기 이익만 좇아 공동체의 공익을 해치는 집단, 자유의 부산물
- 03 **두 해법**
원인 제거(자유 박탈, 거부) vs 결과 통제(제도 장치, 채택)
- 04 **확장된 공화정**
큰 영토일수록 다양한 이익이 견제, 한 파벌의 결집이 어렵다
- 05 **권력 분립**
야망에는 야망으로, 연방-주 + 입법-행정-사법의 이중 분립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p>01 파벌의 세 요소 다수든 소수든 + 자기 이익 + 공동체에 해. 세 요소를 모두 갖춰야 파벌이다.</p>	<p>02 두 해법 외우기 원인 제거 거부, 결과 통제 채택. 함정 단골 1순위, 절대 헛갈리지 말 것.</p>	<p>03 역설 외우기 큰 공화국이 더 안전하다. 직관과 반대이므로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함정 자리다.</p>	<p>04 9강과 대비 시민 참여(루소·밀) vs 대의제(매디슨). 외적 준거 보기 문항의 핵심 비교 축.</p>
--	---	---	--

함께 볼 단원

<p>시민 참여 정반대 자세</p>	<p>같은 단원집 9강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이론」 — 루소·밀·페이트르만·하버마스가 시민의 직접 참여를 옹호한다. 매디슨의 대의제와 정반대 자세이므로 외적 준거 비교 문항의 단골이다.</p>
----------------------------	---

사회·문화 2강

다섯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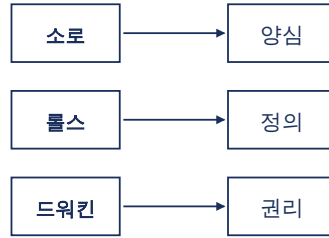
시민 불복종의 자격

- 01 부당한 법
- 02 공개성
- 03 비폭력
- 04 처벌 감수
- 05 최후 수단

다섯이 모두 맞아야 인정

세 사상가

정당화의 세 토대



근거가 셋으로 줄었다

부당한 법에 양심·정의·권리로 맞선다

시민 불복종

부당한 법에 맞서는 시민의 세 토대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265	영역	사회·문화 / 정치·법철학
주제	시민 불복종, 양심, 정의의 원칙, 권리	연계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매디슨의 공화정



부당한 법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01

시민 불복종의 출발

정의와 소로의 양심

1848년 한 미국인이 인두세를 내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그 세금은 노예제도를 떠받치고 멕시코를 치는 부당한 전쟁에 쓰인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다. 하룻밤뿐이었지만 그가 남긴 한 줄이 이후 한 세기 반의 정치 철학을 흔든다. **법보다 양심이 먼저다.** 이 한 줄을 남긴 인물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고, 그가 펴낸 글이 『시민 불복종』이다. 소로의 자세는 톨스토이를 거쳐 인도의 간디로, 다시 미국의 마틴 루서 킹으로 이어졌고, 20세기 후반 롤스와 드워킨이 이 흐름을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는다. 이 단원은 시민 불복종의 정의, 그리고 세 사상가의 정당화 근거를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시민 불복종이란 무엇인가 개념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이나 정책을 일부러, 드러내 놓고 어기는 행위**다. 핵심이 두 가지다. 법을 어기지만 그 처벌은 그대로 받는다. 이 점이 단순한 범죄와 같린다. 범죄자는 법을 피해 도망친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 스스로 선다. 이 자세가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항의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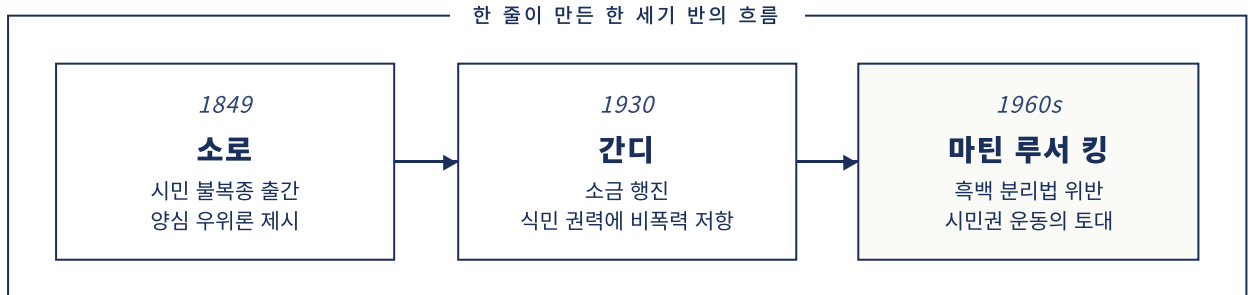
단순 범죄	시민 불복종
<p>법을 피한다</p> <p>개인 이익을 위해 몰래</p> <p>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처벌도 피하려 한다. 행위 자체에 정치적 항의의 뜻이 없다.</p>	<p>법에 맞선다</p> <p>정의를 위해 공개적으로</p> <p>드러내 놓고 법을 어기고 처벌도 받아들인다. 그 행위 자체가 부당한 법에 보내는 항의의 신호다.</p>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다섯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하나, 어기는 대상이 부당한 법이나 정책이어야 한다. 둘, 행위가 공개적이어야 한다. 몰래 숨는 순간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셋,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넷,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다섯, 투표·청원·항의 같은 정상 절차가 먼저 실패한 뒤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 02 소로 — 양심이 법보다 먼저다 양심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다.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았고, 『월든』과 『시민 불복종』을 남겼다. 1846년 그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하룻밤 감옥에 갇혔다. 거부의 이유는 분명했다. 그 세금이 노예제도를 떠받치고 멕시코를 치는 전쟁의 군비로 쓰였기 때문이다. 자기 돈을 거기에 보태는 일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소로의 핵심 명제는 한 줄로 줄여진다. **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정의에 어긋난 법을 무조건 따를 까닭이 없다. 대신 그는 처벌은 그대로 받는다. 감옥에 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사상을 직접 증명한다.



02

두 이론가의 정당화

롤스와 드워킨

§ 03 롤스 — 정의의 원칙이 떠받친다 정의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20세기 후반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철학자다. 1971년에 펴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 롤스는 이 책에서 시민 불복종에 정교한 이론적 토대를 부여한다.

그가 깔아 둔 토대는 정의의 두 원칙이다. **자유 원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한다. 이 토대 위에서 그는 시민 불복종을 이렇게 정의한다. **거의 정의에 합치하는 사회 안에서, 일부 법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때, 그 법을 공개적·비폭력적·양심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핵심은 첫 구절이다. 시민 불복종은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혁명이 아니다. 헌법의 다수결 원리는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그 안의 부당한 법만 거부한다. 처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이 점을 증명한다.

§ 04 드워킨 — 권리는 다수결을 이긴다 권리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1931~2013)은 20세기 후반 미국 법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다. 1977년 펴낸 『권리를 진지하게(Taking Rights Seriously)』에서 그는 시민 불복종을 도덕적·헌법적 권리의 행사로 다시 짚는다. 그의 가장 결정적인 한 줄은 이렇다. **권리는 다수결을 이기는 으뜸때다**. 어떤 권리는 다수가 아무리 원해도 짓밟지 못한다. 다수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더라도 그 정책이 소수의 도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을 세 유형으로 나눈다. **양심형**은 소로식 불복종이다. **정의형**은 롤스식 불복종이다. **정책형**은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반대하는 불복종으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대표 사례다. 그가 가장 무게를 둔 것은 권리 침해에 맞선 불복종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짓밟힐 때 시민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 자세는 시민 불복종을 단순한 양심의 표현에서 법적 권리의 행사로 끌어올린다.

세 사상이 한눈에

구분	소로	롤스	드워킨
정당화 근거	개인의 양심	정의의 원칙	도덕적·헌법적 권리
핵심 명제	법보다 양심이 먼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의 위반	권리는 다수결을 이긴다
처벌 감수	몸으로 보여 줌	체제 인정의 증거	권리 행사의 한 부분
대표 저서	시민 불복종 (1849)	정의론 (1971)	권리를 진지하게 (1977)

세 사상가는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토대로 정당화한다. 양심·정의·권리는 서로 부딪치지 않고 보완 관계를 이룬다. 어느 한 토대만으로 모든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자세를 묶어 두면 시민 불복종을 다각도로 읽어 낼 수 있다.

한 사례에 세 토대를 겹쳐 보면 의미가 또렷해진다. 1960년대 마틴 루서 킹은 흑백 분리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고 처벌도 받아들였다. **소로**의 토대로 보면 인종 차별에 동조할 수 없다는 양심이 작동한다. **롤스**의 토대로 보면 미국은 거의 정의로운 체제이지만 그 안의 분리법은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 **드워킨**의 토대로 보면 평등권은 다수가 어떻게 투표해도 짓밟지 못하는 으뜸때다. 세 토대가 같은 행위를 나란히 떠받친다.

03

민주주의 안의 시민 불복종

다수결의 한계

§ 05 다수결의 한계, 시민 불복종이 메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굴러간다. 다수가 고른 정책이 시행되고 다수가 만든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결이 늘 옳지는 않다.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순간, 다수의 정념이 정의를 뒤로 미르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시민 불복종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운다. 부당한 법에 양심적·이성적으로 맞서는 가장 강한 시민 참여 방식이다. 다만 법치주의와의 긴장은 피할 수 없다. 법치주의는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그 법을 거부한다. 두 자세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다. 공개성·비폭력·처벌 감수의 조건이 바로 이 균형을 잡으려는 장치다.

핵심 명제

소로, 시민 불복종 (1849)

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정의에 어긋난 법을 무조건 따를 까닭은 없다.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부당한 법 → 정상 절차 실패 → 공개적·비폭력적 위반 → 처벌 감수**. 이 흐름의 어느 한 칸이 빠지면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평가원 함정 단골은 "몰래 어겼다", "처벌을 피해 달아났다", "투표 한 번 안 해 보고 바로 거부했다" 같은 선지로 다섯 조건 가운데 하나를 빼 둔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정의

부당한 법을 일부러 어기되 처벌은 그대로 받는다.

02 다섯 조건

부당함·공개성·비폭력·처벌 감수·최후 수단을 모두 채워야 한다.

03 소로

양심이 법보다 먼저, 자기 실천으로 증명한다.

04 롤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정의 원칙에 어긋난 법을 양심적으로 위반한다.

05 드워킨

권리는 다수결의 으뜸때, 시민 불복종은 양심·정의·정책의 세 유형으로 갈린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세 토대를 한 짝으로

양심(소로)·정의(롤스)·권리(드워킨). 사례 문항의 출발점이다.

02 다섯 조건 빠짐없이

함정 선지는 다섯 가운데 하나를 빼 둔다. 다섯을 외워 두자.

03 롤스의 전제 한 구절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구절이 혁명과 갈라지는 경계선이다.

04 으뜸때 비유

드워킨의 권리 우위는 카드 게임의 으뜸때로 외우면 헛갈리지 않는다.

함께 볼 단원

시민 참여 민주주의 이론

루소·밀의 시민 참여론과 매디슨의 다수 파벌 경계를 함께 보면, 시민 불복종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어디에 자리하는지 한 줄로 잡힌다.

사회·문화 3강

두 사상가

참여를 보는 자세

루소

일반 의지
직접 민주주의

밀

참여의 교육적 가치
대의제 + 지방 자치

직접 vs 보완

두 시선

옹호와 신중이 마주 본다

옹호

효능감 · 정당성
역량 · 공동체

신중

비효율 · 비합리
다수 횡포 · 전문성

두 시선이 함께 자리한다

시민은 얼마나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

직접 참여인가, 대의제의 보완인가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44	영역	사회·문화 / 정치 이론
주제	시민 참여, 일반 의지, 참여 교육, 심의 민주주의	연계	시민 불복종, 매디슨의 공화정 이론



시민은 얼마나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01

시민 참여의 두 출발

정의와 루소의 자세

선거철이 되면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시민은 투표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정책의 토론과 결정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가. 평소에는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가 선거 때만 던지는 한 표가 진짜 시민 참여인가, 그 한 표는 사실 한정된 참여일 뿐인가. 이 물음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정치사상사의 한 분기점이다. 루소와 밀이 여기에서 갈렸고, 20세기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다시 이 길을 돌아 본다. 이 단원은 시민 참여의 정의, 루소·밀의 두 자세, 참여 민주주의의 등장, 그리고 참여를 보는 옹호·신중 두 시선을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시민 참여란 무엇인가 개념

시민 참여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이다. 한 줄로 줄이면,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이는 행위다. 선거, 정책 토론, 청원, 시민 단체 활동, 공청회, 정치적 의사 표현이 모두 여기에 든다. 민주주의의 어원이 그리스어 **데모스(demos, 인민)**와 **크라토스(kratos, 권력)**의 합성이라는 사실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인민의 권력, 곧 시민이 정치 결정의 주체가 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론은 결국 "어떤 방식과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한 물음으로 좁혀진다.

직접 참여

시민이 곧장 결정한다

국민투표 · 주민투표 · 국민발안

시민이 대표를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에 직접 의사를 표시한다. 결정의 주체가 시민 본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간접 참여

대표를 통해 참여한다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

시민이 대표를 뽑아 그 대표가 결정을 내린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결정 주체와 시민 사이에 한 단계가 끼어든다.

두 방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토대로 하면서도 국민투표·주민투표 같은 직접 참여 장치를 함께 운영해 보완 관계를 만든다.

§ 02 루소 — 일반 의지와 직접 민주주의 루소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1762년에 펴낸 『사회계약론』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력히 옹호한다. 그의 출발점은 **인민 주권의 원칙**이다. 정치 공동체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고, 이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 줄 수 없다. 핵심 개념이 **일반 의지(volonté générale)**다. 일반 의지는 시민 전체의 공통된 이익을 향한 의지로, 각자의 사사로운 의지(특수 의지)와 다르다. 공동체의 결정은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하며, 일반 의지는 시민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결정해야 비로소 뚜렷이 드러난다. 이 인식에서 그의 유명한 **대의제 비판**이 나온다. 대표를 통한 참여는 인민 주권을 양도하는 일이며,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루소가 본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이고, 도시국가 규모의 작은 공동체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대의제 비판의 결정적 한 줄

루소, 사회계약론 (1762) 제3권

영국 인민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을 뽑는 짧은 동안에만 자유로울 뿐이며,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02

대의제를 보완하는 두 흐름

밀과 참여·심의 민주주의

§ 03 밀 — 참여 그 자체가 시민을 만든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자유주의 사상가이지만 시민 참여의 가치를 깊이 강조한 인물이다. 루소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는 받아들여되, 그 안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밀의 핵심 명제는 **참여의 교육적 가치**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시민의 정치적·도덕적 능력을 키운다. 참여를 통해 시민은 자기 이익만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살피는 법을 익히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세를 배운다. 참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시민을 만든다. 이 인식에서 그는 **지방 자치와 결사체(associ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 정치에 한 표를 던지는 일만으로는 시민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는다. 지역 자치, 직장 운영, 시민 단체 활동 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밀의 이 자세는 20세기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곧장 이어진다.

루소와 밀 한눈에

구분	루소	밀
핵심 가치	인민 주권의 불가양	참여의 교육적 가치
대의제 자세	비판 (주권의 양도)	수용하되 보완 필요
참여 모델	직접 민주주의 (작은 공동체)	대의제 + 지방 자치·결사체
대표 저서	사회계약론 (1762)	대의정부론 (1861)

§ 04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등장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짚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민 운동과 학생 운동의 자리에서 시민들은 선거 외에는 정치에서 사실상 배제된다고 느낀다. 이때 등장한 흐름이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다. 캐롤 페이트먼은 1970년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에서 대의제 중심 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깎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정치 영역뿐 아니라 직장·학교·지역사회 같은 일상의 자리에서도 시민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밀의 참여 교육론을 한 단계 더 단단히 다듬은 자세다. 1980년대에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등장한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과 숙고를 거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 민주주의가 **참여의 양**을 늘리는 방향이라면, 심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참여 민주주의

참여의 양을 늘린다

페이트먼 · 일상 민주주의

정치뿐 아니라 직장·학교·지역사회까지 시민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영역을 넓힌다. 참여 그 자체가 시민을 단련한다.

심의 민주주의

참여의 질을 높인다

하버마스 · 공론장의 토론

표결 이전에 시민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과 숙고가 먼저다. 정당성은 토론의 질에서 나온다는 자세다.

03

참여를 보는 두 시선

옹호와 신중, 그리고 출제 사례

§ 05 옹호와 신중 — 같은 참여를 보는 두 시선

두 시선

시민 참여를 보는 시선은 옹호와 신중의 두 자리로 갈린다. 옹호 쪽은 네 가지 효과를 짚는다. **정치 효능감**이 커지고, 시민이 함께 결정한 **정책의 정당성**이 두터워지며, 참여 그 자체가 **시민의 역량을 단련**한다. 함께 결정한 경험은 **공동체 의식**을 만든다. 신중 쪽도 네 가지를 짚는다. 모든 시민이 모든 사안에 참여하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다수의 무지나 감정이 결정에 그대로 흘러드는 **비합리**의 위험이 있다. **다수의 횡포**는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고, 복잡한 정책에는 시민의 **전문성 부족**이 약점이 된다. 슘페터는 가장 회의적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시민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엘리트들이 표를 두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시민의 자리를 엘리트 선택에 한정하는 자세다.

평가원 출제 사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겠군.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시민 참여의 정의 → 루소·밀의 두 자세 → 참여·심의 민주주의의 등장 → 옹호·신중의 두 시선**. 평가원은 위 9월 모평에서 듀이를 시민 참여 옹호자로, 리프만을 시민의 정치적 무능을 우려한 자세로 대비시켜 이 흐름을 그대로 옮겨 출제했다. 함정 단골은 "직접 민주주의가 항상 옳다", "밀은 대의제를 거부했다", "심의 민주주의는 참여의 양만 강조한다" 같은 한 칸 비틀기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시민 참여

시민이 정치 의사 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

02 루소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 불가양,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03 밀

참여의 교육적 가치, 대의제를 받아들이며 지방 자치·결사체를 강조한다.

04 참여·심의

페이트먼의 일상 참여, 하버마스의 합리적 토론으로 대의제를 보완한다.

05 두 시선

옹호(효능감·정당성·역량·공동체) vs 신중(비효율·비합리·다수 횡포·전문성).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루소·밀 한 줄로

일반 의지(루소) vs 참여의 교육(밀). 정당 선지의 단골 출발점이다.

02 참여 vs 심의

양과 질의 두 자세를 구별하자. 페이트먼·하버마스가 짝이다.

03 듀이와 리프만

2026학년도 9월 모평을 그대로 복습해 두자. 옹호·신중의 대비 그대로다.

04 옹호·신중 표

네 가지 효과 vs 네 가지 우려. 사례 적용 문항의 핵심 도구다.

함께 볼 단원

시민 불복종 공화정 이론

시민 참여의 가장 강한 형식인 시민 불복종, 다수 파벌을 경계한 매디슨의 공화정과 함께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큰 지도가 한 줄로 잡힌다.

사회·문화 4강

유추 해석

빈자리를 메우는 자세

세 추론

방향이 같린다



뺏은 자리의 규정을 빌려 온다

연역 일반 → 개별

귀납 개별 → 일반

유비 개별 → 개별

유비가 유추 해석의 토대

법의 빈자리, 뺏은 자리로 메운다

법의 유추 해석과 유비 추론

빈자리를 뺏은 자리로 메우는 자세

출처 | 2027 수능특강 독서 p.269

영역 | 사회·문화 / 법학·논리학

주제 | 법의 흠결, 유추 해석, 유비 추론, 죄형 법정주의

연계 | 시민 불복종, 법적 의제, 형법의 인과관계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자리는 어떻게 채우는가.

빈자리와 유추 해석

법의 흠결과 메우는 자세

01

법의 유추 해석과 예비 추론

법은 사회의 모든 자리를 미리 규율하려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사건이 끝없이 등장한다. 입법자가 모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법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직접 다룬 법조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법학에서는 이를 **법의 흠결(欠缺)**이라 부른다. 법의 빈자리다. 법관은 이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다. "조문이 없으니 판결도 할 수 없다"라고 회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관은 한 가지 자세를 꺼낸다. 그 사건과 닮은 다른 사건의 법조문을 가져와 적용하는 자세다. 이것이 **유추 해석**이고, 그 논리적 토대가 **유비 추론**이다.

§ 01 법의 흠결 — 빈자리는 왜 생기는가 빈 자리

법의 흠결은 어떤 사안에 직접 적용할 법조문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 줄로 줄이면 **법의 빈자리**다. 흠결은 법체계의 결함이 아니다. 법이 모든 미래를 미리 다룰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까닭 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리
새로 등장한 사회 현상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자리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들을 다룰 조문이 아예 비어 있다.

까닭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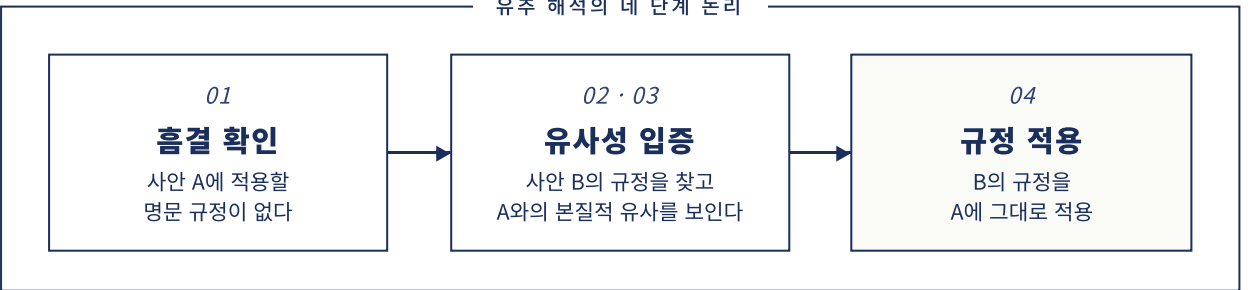
의도적으로 둔 빈자리
일반 원칙만 정해 두는 자세

모든 자리를 일일이 정하면 법조문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입법자가 일부러 일반 원칙만 두고 세부는 해석에 맡긴다.

어느 까닭에서 생긴 흠결이든, 법관은 사건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재판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은 빈자리를 메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자세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유추 해석이다.

§ 02 유추 해석 — 닮은 자리에서 법을 빌려 온다 유추

유추 해석은 **어떤 사안에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의 법조문을 끌어와 적용하는 해석 방법**이다. 한 줄로 줄이면, 빈자리에 닮은 자리의 규정을 빌려 오는 자세다. 자전거와 자동차로 풀면 이해가 쉽다. 어떤 법조문이 "자동차로 인도에 진입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 들어왔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전거는 모두 운송 수단이고, 인도의 보행자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본질이 닮았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자전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02

해석 방법과 추론 방식

다섯 해석과 세 추론

§ 03 법 해석의 다섯 자리 — 평가원이 짚은 자리 해석 방법

2026학년도 수능 지문은 법 해석의 여러 방법을 정밀하게 다뤘다. 본 단원의 핵심과 정확히 맞는 자리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법 해석**이라 한다. 출발점은 법조문의 일상적 의미를 따르는 **문리 해석**이다. 그것만으로 어렵다면 **체계적 해석**(맥락 고려), **역사적 해석**(입법 취지 고려), **목적론적 해석**(법의 목적 고려)이 차례로 동원된다. 다섯째가 본 단원의 **유추 해석**이다. 앞의 네 방법은 모두 법조문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의미를 풀어 내는 자세지만, 유추 해석은 **법조문이 없는 자리**에서 닮은 자리의 규정을 빌려 오는 자세다. 다른 방법과 결을 달리하는 자리가 여기에 있다.

법 해석의 다섯 방법

방법	핵심	예시
문리 해석	법조문의 일상적 의미를 따른다	"자동차"는 통상 의미의 자동차
체계적 해석	법조문이 놓인 맥락을 본다	같은 법률 다른 조항과의 일관성
역사적 해석	입법 과정·취지를 본다	법안 심의 기록 참고
목적론적 해석	법의 목적과 취지를 본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안전 확보
유추 해석	유사 사안의 규정을 끌어온다	자동차 규정을 자전거에 적용

§ 04 유비 추론 — 유추 해석의 논리적 토대 유비 추론

유비 추론(類比 推論)은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사물에 알려진 성질을 다른 사물에 적용하는 추론 방식**이다.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자세이며, 유추 해석은 이 유비 추론을 법학에 적용한 자리다. 형식을 풀면 이렇다. "A는 성질 a, b, c, d를 가진다. B는 성질 a, b, c를 가진다. 따라서 B도 성질 d를 가질 것이다." 일상 사례로는 지구와 화성의 비교가 흔하다. 지구는 물·대기·생명체를 가진다. 화성은 물과 대기를 가진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유비 추론은 연역 추론과 달리 결론이 **필연적이지 않다**. 결론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이다.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이 클수록 결론의 확실성이 커지고,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결론은 틀린다. 그래서 유추 해석에서도 **유사성의 본질성**을 잘 따져야 한다.

연역·귀납·유비 한눈에

구분	연역	귀납	유비
방향	일반 → 개별	개별 → 일반	개별 → 다른 개별
결론	필연적	확률적	확률적
핵심 토대	전제의 참	관찰의 누적	두 사물의 유사성

03

유추 해석의 한계

죄형 법정주의와 출제 사례

§ 05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죄형 법정주의

유추 해석은 법의 흠결을 메우는 유용한 자세지만, 모든 법 영역에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 가장 결정적 한계가 **형법**에 있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이유는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행위가 범죄임을 미리 법률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에 없는 행위를 유추 해석으로 처벌하면, 시민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미리 알 수 없게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 수 없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의 문을 닫는다. 반면 민법·상법·세법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에서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 시민의 권리 관계를 다루는 자리에서 흠결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본질적 유사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유추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므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평가원 출제 사례

2026학년도 수능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법의 흠결 → 닮은 사안의 규정 확인 → 본질적 유사성 입증 → 유추 적용**. 다만 형법에서는 이 흐름이 죄형 법정주의에 막힌다. 평가원 함정 단골은 "표면적으로 닮았으니 유추 가능하다", "형법에서도 시민에게 유리하면 유추할 수 없다", "유비 추론은 결론이 필연이다" 같은 한 칸 비틀기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법의 흠결

어떤 사안에 직접 적용할 법조문이 없는 빈자리.

02 유추 해석

본질적 유사 사안의 규정을 끌어와 빈자리에 적용한다.

03 유비 추론

두 사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성질을 다른 사물에 옮기는 확률적 추론.

04 세 추론

연역(일반→개별·필연), 귀납(개별→일반·확률), 유비(개별→개별·확률).

05 형법 금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막힌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네 단계로 외우자

흠결 확인 → 유사 규정 찾기 → 유사성 입증 → 적용, 사례 문항의 출발점이다.

02 세 추론 한 짝

연역·귀납·유비의 방향과 결론 성격을 표로 외워 두자. 함정 단골이다.

03 본질적 유사

표면 유사만으로는 유추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본질의 닮음이 핵심이다.

04 형법 금지선

죄형 법정주의는 외적 준거 보기에 자주 등장한다. 한 줄로 외워 두자.

함께 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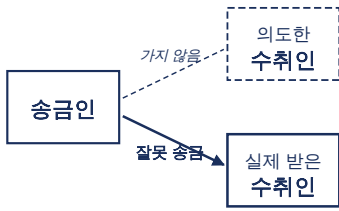
법적 의제 형법의 인과관계

법적 의제는 다르게 만든 자리를 같다고 보는 자세, 형법의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를 잇는 자세다. 본 단원과 함께 보면 법학의 자세가 한 짝으로 잡힌다.

사회·문화 5강

송금 사고

보낸 곳과 받은 곳이 어긋난다



한 자리만 어긋나도 돈이 갈린다

세 자리

민사·형사·금융이 함께 다룬다

민사	부당이득 반환
형사	횡령죄 적용
금융	예금자보호법

세 책임이 별개로 작동한다

잘못 들어간 돈, 세 자리에서 다룬다

착오 송금과 법적 처리

잘못 들어간 돈을 돌려싼 세 책임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27	영역	사회·문화 / 민법·형법·금융법
주제	착오 송금, 부당이득, 횡령죄, 예금자보호법	연계	법적 의제, 유추 해석, 강행 법규



잘못 들어간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01

착오 송금과 민사 처리

정의와 부당이득 반환

모바일 뱅킹 화면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누르거나 이름을 헛갈리면, 단 몇 초 만에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다. 카카오뱅크·토스 같은 간편 송금이 일상이 된 지금, 이런 착오 송금은 매년 수만 건씩 일어난다. 잘못 들어간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은행은 어떤 책임을 지나. 단순히 보이는 이 물음 속에서 민법·형법·금융법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 단원은 착오 송금의 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횡령죄 적용,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환 지원 제도를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착오 송금이란 무엇인가 정의

착오 송금은 **송금인이 수취인 정보(계좌번호·수취 은행·수취인 이름)를 잘못 입력해, 본래 의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일이다.** 한 줄로 줄이면, 보내려던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긋나는 송금 사고다.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이 일상이 되면서 송금에 드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 화면을 몇 번 누르면 송금이 끝나고, 그 뒤로는 정정도 취소도 어렵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어긋나도 돈은 곧장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다.

편지의 자리

되돌릴 틈이 있다
우편번호 한 자리가 어긋나도

도착 전에 우체국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시간이 있다.
잘못된 주소를 발견하면 반송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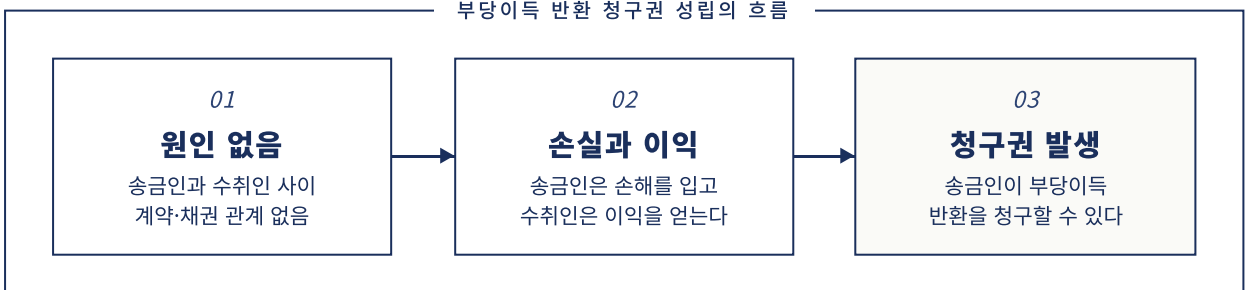
모바일 송금

되돌릴 틈이 없다
클릭과 동시에 송금 완료

몇 초 만에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들어가고, 받은 사람은 곧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 02 민사 처리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사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이렇게 규정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 줄로 줄이면, 받을 만한 법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며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명제다. 착오 송금에 그대로 적용된다. 잘못 받은 사람은 송금인과 어떤 계약이나 채권 관계도 없는데도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송금인 쪽에서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손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넘어간 자리다. 따라서 그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청구권이 있어도 현실의 회수는 만만치 않다. 받은 사람이 돈을 이미 빼서 썼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생긴다. 송금인이 소송을 걸려면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은행이 곧장 알려 줄 수도 없다.



02

형사 처리와 금융 보호

횡령죄와 예금자보호법

§ 03 형사 처리 —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이렇게 규정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핵심 요건이 둘이다. **보관자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 받은 사람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본다.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송금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는 자세다. 그래서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거나 옮긴다면, 단순한 민사상 부당이득 보유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송금인이 연락해 사정을 알린 뒤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인출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사업상 다른 입금과 구별하지 못한 채 사용한 경우라면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인식 단계가 책임의 깊이를 가른다.

횡령죄 성립

알고도 임의 사용

고의 인정 가능성 높음

송금인의 연락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인출·이체한 경우다. 형사 횡령죄까지 더해진다.

횡령죄 불성립

모르고 사용

민사 부당이득만 남음

사업상 다른 입금과 구별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고의 인정이 어려워 횡령죄까지 가지 않는다.

§ 04 금융 보호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금융

은행이 임의로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돌려주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받은 사람의 예금도 법률상 그의 재산이며,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받은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 정도다. 응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는 긴 길을 가야 한다. 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송금인이 자진 반환을 시도해 실패한 뒤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송금인의 청구권을 매입해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실패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신청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고, 회수 비용을 일부 차감해 돌려주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세 자리의 법적 효과 한눈에

처리 영역	적용 법리	송금인의 권리	수취인의 의무·책임
민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받은 이익 반환 의무
형사	형법 제355조 횡령죄	고소·고발 가능	알면서 임의 사용 시 횡령죄
금융 보호	예금자보호법 (2020 개정)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공사의 자진 반환 권유 대상

03

이중 책임과 출제 사례

민·형사의 별개 작동

§ 05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작동한다

이중 책임

착오 송금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리다. 받은 사람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그대로 남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책임은 서로 별개로 작동한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민사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민사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도 않는다. 평가원이 즐겨 묻는 자리가 바로 이 경계다. 받은 사람의 인식과 행위 단계에 따라 책임의 깊이가 갈린다. 모르고 잠시 보유만 한 경우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만 남고, 잘못된 송금임을 알고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라면 형사 횡령죄까지 작동한다.

평가원 출제 사례

2019학년도 6월·9월 모의평가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잘못된 송금 → 수취인 계좌 도착 → 인식 단계의 갈림 → 모르면 부당이득만, 알면 횡령까지 → 송금인의 회수(직접 청구 또는 공사 지원).** 함정 단골은 "민사로 갚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은행이 직접 돈을 빼서 돌려줄 수 있다", "모르고 쓴 경우에도 횡령이다" 같은 한 칸 비틀기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정의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송금 사고.

02 민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03 형사

잘못된 송금임을 알면서 임의 사용·반환 거부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04 은행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 처분 불가, 자진 반환 권유까지만 가능하다.

05 금융 보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부당이득 두 요소

법률상 원인 없음 + 타인의 손실로 얻은 이익. 둘 다 충족돼야 청구권이 선다.

02 횡령죄 두 요건

보관자 지위 + 임의 사용 또는 반환 거부. 인식이 핵심 갈림이다.

03 민·형 별개 작동

두 책임을 묶는 선지가 단골 함정이다. 한 줄로 외워 두자.

04 2019 모평 복습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지문을 그대로 읽고 사례 적용 패턴을 익혀 두자.

함께 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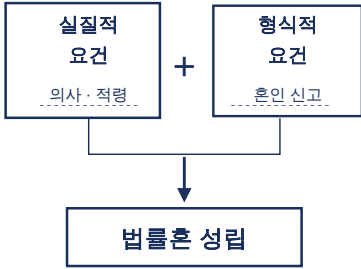
법적 의제 유추 해석

법적 의제는 다른 사실을 같다고 보는 자세, 유추 해석은 빈자리에 닮은 자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자세다. 본 단원의 보관자 지위 인정과 부당이득 적용이 같은 결에 자리한다.

사회·문화 6강

두 요건

법률혼 성립의 두 자리



둘이 함께 채워져야 한다

두 결함

무효와 취소가 갈린다



시간의 곁이 갈린다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부부다

혼인의 법적 요건과 효력

두 요건, 두 효력, 두 결함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32	영역	사회·문화 / 가족법·민법
주제	법률혼주의, 실질적·형식적 요건, 신분·재산 효력, 무효와 취소	연계	착오 송금과 법적 처리, 법적 의제



두 사람은 언제 비로소 부부가 되는가.

01

법률혼과 실질적 요건

신고와 다섯 자격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부부가 되지는 않는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도 법은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의미의 부부가 되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고, 혼인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한 혼인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동거 그 이상의 권리와 의무를 한 번에 부여한다. 결혼은 마음의 영역이지만, 그 마음이 법의 무대 위에 올라설 때 비로소 법률혼이 된다. 이 단원은 법률혼주의의 의미, 실질적·형식적 요건, 신분·재산의 두 효력,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갈림을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법률혼주의 — 신고가 있어야 부부다 법률혼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다. 결혼식이나 사실상의 동거만으로는 법적 부부가 되지 못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혼이 성립한다. 민법 제812조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한 줄로 줄이면, 부부의 자리는 행정청에 신고된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왜 신고를 요구하는가.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자녀·친족·상속·재산 관계 등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분명한 형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적 등록과 비슷하다. 강의실에 매일 앉아 있어도 학적이 없으면 정식 학생이 아니다. 법률혼도 같은 결이다. 사이가 아무리 깊고 오래되어도 신고가 없으면 법은 그들을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02 실질적 요건 — 신고 이전에 갖추어야 할 자격 실질 요건

혼인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사람이 신고 이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자격을 **실질적 요건**이라 부른다. 민법은 다섯 자리를 정해 둔다. 첫째, **혼인 의사의 합치**.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가져야 하며, 이 의사가 없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다. 둘째, **혼인 적령**.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셋째, **미성년자의 동의**. 만 18세이지만 성년(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근친혼 금지**. 직계혈족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는 혼인 자체가 무효이며,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사이는 혼인이 취소될 수 있다. 다섯째, **중혼 금지**.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다섯 요건은 두 사람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사이의 균형 위에 놓여 있다. 의사의 합치는 결혼의 자발성을, 적령과 동의는 미성숙한 결정으로부터의 보호를, 근친혼 금지와 중혼 금지는 가족 질서와 사회적 윤리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자리다. 시험에서는 다섯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진 사례가 보기로 제시되고, 그 사례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항이 가장 흔하다.

다섯 요건과 위반 시의 효과

요건	핵심	위반 시 효과
의사 합치	부부가 되겠다는 진정한 의사	무효
혼인 적령	만 18세 이상	취소
미성년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소
근친혼 금지	8촌 이내 혈족 등	무효 또는 취소
중혼 금지	한 사람에게 한 배우자	취소

02

형식적 요건과 효력

신고 절차와 두 결

§ 03 형식적 요건 — 혼인 신고와 형식적 심사 형식 요건

실질적 요건을 갖춘 두 사람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행정관서에 제출하면, 행정관서는 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심사한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고, 만 18세 이상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있으며, 실질적 요건에 위반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다.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법률혼이 성립한다. 다만 행정관서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이지 실질적 심사가 아니다. 신고서에 적힌 사항이 외관상 적합한지를 확인할 뿐이다.

이 자세 때문에 한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이나 의사 합치가 없는 가장 혼인도 형식상 적합하면 일단 신고가 수리될 수 있다. 그 혼은 나중에 법원의 **무효 확인의 소나 취소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신고 수리와 효력 인정이 별개**라는 자세가 여기에 자리한다. 이 절차적 차이가 다음 § 05에서 다룰 무효·취소의 효과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

§ 04 혼인의 효력 — 신분과 재산의 두 결 두 효력

법률혼이 성립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며, 그 순간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는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작동한다. 효력은 크게 신분과 재산의 두 결로 나뉜다. 신분의 결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하고, 재산의 결은 돈과 거래를 정한다. 두 결은 부부 생활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받친다.

신분적 효력	재산적 효력
<p>사람 사이의 관계가 선다</p> <p>친족·동거·부양·정조</p> <p>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인척이 된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돕고 가족 생활을 함께 운영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정조 의무도 함께 작동한다.</p>	<p>돈과 거래의 자리가 정해진다</p> <p>별산제·대리권·연대 책임</p> <p>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두는 부부 별산제(제830조)가 원칙이다. 일상 가사에서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고 (제827조), 그 채무는 함께 책임진다(제832조).</p>

신분·재산 두 효력 한눈에

구분	핵심 효력	근거 조문
신분	친족 관계, 동거·부양·협조, 정조 의무	민법 제826조 등
재산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민법 제827·830·832조

한 가지 짚어 둘 자리가 **일상 가사의 범위**다. 식료품 구입, 자녀 학비, 공과금 같은 일상의 거래는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할 수 있고 그 채무도 함께 책임진다. 그러나 거액의 부동산 거래나 사업상의 큰 계약처럼 일상의 결을 벗어나는 행위는 일상 가사가 아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한 그런 행위에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평가원이 함정 선지를 자주 만드는 단골 자리다.

03

무효·취소와 사실혼

결합의 두 효과와 신고 없는 결합

§ 05 무효와 취소 — 소급과 불소급의 결정적 차이

요건에 흠이 있는 혼인은 두 갈래로 나뉜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사유는 혼인 의사 없음,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 관계다(민법 제815조). **취소**는 법원의 취소 판결로 효력이 사라지며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취소 이전까지는 부부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이 발생한 신분·재산 효력은 유지된다. 사유는 적령 위반, 동의 결여, 일정 근친혼, 중혼, 사기·강박이다(제816조). 평가원이 가장 즐겨 묻는 자리가 **소급·불소급의 차이**다.

무효와 취소 한눈에		
구분	무효	취소
대표 사유	혼인 의사 없음, 8촌 이내 혈족	적령 위반, 동의 결여, 중혼, 사기·강박
소급 여부	처음부터 무효 (소급)	판결 시점부터 무효 (불소급)

§ 06 사실혼 — 신고 없는 결합의 보호 범위

사실혼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결합이라 친족 관계가 없고 **상속권도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동거·부양·정조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 부당 파기 시 손해 배상, 해소 시 재산 분할은 인정한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법률혼주의 혼인 신고가 있어야 법률혼이 성립한다.
02	실질 요건 의사 합치·적령·동의·근친혼 금지·중혼 금지의 다섯.
03	두 효력 신분(친족·동거·정조)과 재산(별산·대리·연대).
04	무효·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취소는 판결 시점부터 효력 상실.
05	사실혼 상속권은 없지만 동거·부양·재산 분할은 인정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실질·형식 구분 실질은 자격, 형식은 신고. 헛갈리면 함정이다.	02 소급·불소급 무효는 처음부터, 취소는 판결부터. 한 줄로 외우자.	03 일상 가사 범위 일상에만 대리·연대. 거액은 일상이 아니다.	04 법률혼·사실혼 상속권 유무가 가장 큰 갈림이다.
--	---	--	---

함께 볼 단원	
착오 송금 법적 의제	착오 송금의 민·형사 이중 책임과 법적 의제의 사실 변환을 함께 보면 민법의 자세가 한눈에 잡힌다.

사회·문화 7강

세 자세

합법성의 세 자리



가운데가 본 단원의 자리

두 원칙

법치와 실질이 마주 본다



균형이 조세법의 깊이

법으로 정하되, 실질로 보충한다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회피

법률과 실질, 두 원칙의 긴장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243	영역	사회·문화 / 헌법·세법
주제	조세 법률주의, 열거·포괄주의, 조세 회피, 실질과세	연계	착오 송금과 법적 처리, 법적 의제



법의 빈자리에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가.

01

조세 법률주의와 두 입법

헌법의 자리와 열거·포괄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거두는 돈이다. 그래서 헌법은 단단한 원칙 하나를 둔다. 국민이 동의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자세다. 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 이 원칙이 **조세 법률주의**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미묘한 자리가 있다. 법률이 미처 정하지 못한 새로운 거래가 등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의 빈자리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자세가 등장하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단원은 조세 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열거주의·포괄주의 두 입법 방식, 절세·조세회피·탈세 세 자세의 구분,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의 자세를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조세 법률주의 — 헌법이 정한 단단한 자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는 우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근거를 둔 원칙이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정한다. 두 조항이 결합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자세가 만들어진다. 18세기 영국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외쳐졌듯, 조세 법률주의는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자리다.

이 원칙은 네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과세 요건 법정주의** — 누가, 무엇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법률로 정해진다. 둘째, **과세 요건 명확주의** —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셋째, **소급 과세 금지** — 이미 끝난 행위에 나중에 만든 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넷째, **합법성의 원칙** — 행정청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세금을 부과한다. 네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의 토대를 함께 떠받친다.

§ 02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 두 입법 방식 두 입법

조세 법률주의를 구체화하는 입법 방식은 두 갈래다.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항목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1번·2번·3번 같은 형식으로 과세 대상이 일일이 적혀 있고, 목록에 없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주의**는 법률에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두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한 줄로 새로운 소득에도 즉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두 자세를 혼합해 쓴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포괄주의로, 소득세는 전통적으로 열거주의를 따랐으나 최근 부분적 포괄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한눈에

구분	열거주의	포괄주의
입법 방식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	일반 규정으로 포괄
예측 가능성	높음	다소 낮음
조세 회피 여지	큼 (빈자리 발생)	작음
새 소득 대응	법 개정 필요	자동 대응 가능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법인세는 가상자산 수익도 곧장 과세할 수 있다. 포괄주의가 새 소득을 자동으로 잡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는 한동안 가상자산 차익이 열거 항목에 없어 과세에서 빠져 있었다. 열거주의의 빈자리가 그대로 드러난 자리다. 이런 빈자리는 다음 § 03에서 다룰 **조세 회피**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

02

세 자세와 실질과세 원칙

절세·회피·탈세와 두 갈래

§ 03 절세·조세 회피·탈세 — 세 자세의 구분 세 자세

세금을 줄이려는 자세는 세 자리로 갈라진다.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자세다. 공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세금이 적은 방향으로 거래를 설계한다. 완전 합법이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조세 회피**는 법의 빈자리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자세다. 형식상으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지만, 입법자가 의도한 자리를 벗어난 거래 구조를 통해 세금을 피한다. 합법인지 위법인지 경계가 모호한 자리이며, 본 단원의 핵심 주제다. **탈세**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세금을 내지 않는 자세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 명백한 위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절세·조세 회피·탈세 한눈에

구분	방식	법적 평가	예시
절세	법이 허용하는 자리에서 세 부담 줄임	완전 합법	연말정산 공제 활용
조세 회피	법의 빈자리·우회 거래 활용	형식상 합법, 실질 회피	조세피난처 자회사 이용
탈세	법률 정면 위반	위법, 처벌 대상	소득 미신고·거짓 신고

§ 04 실질과세 원칙 —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세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근거다. 이 원칙은 조세 회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조세 법률주의만 엄격히 적용하면 형식을 살짝 비틀어 세금을 피하는 자세가 가능해진다. 실질과세 원칙이 이 빈자리를 메운다.

인적 실질과세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

명의를 아닌 사람 기준

거래 명의를 A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B라면 B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차명 거래·명의 신탁의 빈자리를 막는다.

물적 실질과세

실제 거래 본질로 부과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형식상으로는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됐지만 실질이 이자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거래 라벨 비틀기를 막는다.

두 갈래를 묶는 핵심 기준이 다음 § 05에서 다룰 **경제적 실질**이다. 거래가 외형상 어떤 형식을 띠든, 결국 그 거래가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를 기준으로 본질을 판단한다. 이 기준이 우회 거래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활용을 그대로 차단한다.

03

경제적 실질과 두 원칙의 균형

우회 거래와 출제 사례

§ 05 경제적 실질 — 우회 거래와 두 원칙의 균형 경제적 실질

경제적 실질은 거래의 본질적 결과를 가리킨다. 외형상 어떤 형식을 띠든, 그 거래가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를 기준으로 본질을 파악한다. 대표 사례가 **우회 거래**다. 회사 A가 B에게 직접 자산을 팔면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A → 자회사 C → B의 두 단계로 거래를 나누면 형식상 두 거래이지만 경제적 결과는 직접 거래와 같다. 실질과세 원칙은 이 우회 거래를 직접 거래로 보고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 가장 결정적 자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다. 본 단원과 거의 같은 결로 2021학년도 6월 모평이 출제되었다.

평가원 출제 사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법인세율이 더 높은 B국 자회사가 특허 사용 수입을 얻으면, A국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한다.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법률주의의 빈자리 → 우회 거래·조세 회피 → 실질과세 원칙 적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조세 법률주의는 엄격한 법률 적용을,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 너머의 실질을 요구한다. 두 원칙은 긴장 관계다. 너무 엄격한 법률주의는 회피를 허용하고, 너무 폭넓은 실질과세는 자의적 과세로 흐른다. 두 원칙의 균형이 조세법의 가장 깊은 자리다.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법률주의**
헌법 제38·59조의 원칙. 네 하위(법정·명확·소급 금지·합법성).
- 02 **두 입법**
열거주의(예측 높음·빈자리 큼) vs 포괄주의(예측 낮음·빈자리 작음).
- 03 **세 자세**
절세(합법)·조세 회피(경계)·탈세(위법).
- 04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인적(실제 소득자)·물적(실제 거래) 두 갈래.
- 05 **균형**
법률주의의 안정성과 실질과세의 공평이 함께 떠받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p>01 네 하위 원칙 법정·명확·소급 금지·합법성. 사례 문항의 출발점이다.</p>	<p>02 세 자세 구별 절세·회피·탈세를 헛갈리는 선지가 가장 큰 함정이다.</p>	<p>03 인적·물적 실질과세 두 갈래를 사례에 정확히 매칭해 두자.</p>	<p>04 2021 6월 모평 다국적 기업·디지털세 지문을 그대로 복습해 출제 양상을 익히자.</p>
---	--	---	---

함께 볼 단원

착오 송금 법적 의제

착오 송금의 민·형사 이중 책임과 법적 의제의 사실 변환을 함께 보면 민·형·세법이 어떻게 형식과 실질을 다루는지 한눈에 잡힌다.

사회·문화 8강

법인세 흐름

비용에서 세금이 갈린다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다

두 비용

비용을 키우는 두 자리



두 자리가 비용을 키운다

회사의 세금은 비용에서 갈린다

법인세 제도와 감가상각

비용이 만드는 회사의 세금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304	영역	사회·문화 / 세법·회계
주제	법인세, 감가상각, 가속상각, 이자 공제	연계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회피, 착오 송금



회사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떻게 절세하는가.

01

법인세와 감가상각의 자세

그 해 수익·비용과 매칭 원칙

한 회사가 100억 원을 들여 거대한 공장 기계를 샀다고 하자. 이 100억 원은 그 해의 비용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해 매출에서 100억 원을 한꺼번에 빼 줘야 하므로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상하다. 그 기계는 그해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회사에서 돌아가며 매출을 만들어 낼 자산이다. 100억 원을 그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옳은가, 10년에 걸쳐 나눠 처리하는 자세가 옳은가. 이 물음에 답하는 자리가 **감가상각**이고, 그 답이 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곧장 결정한다. 이 단원은 법인세 과세 체계, 감가상각의 두 종류, 가속상각의 시간적 이연, 그리고 이자 공제가 만드는 부채의 세금 방패를 한 짝으로 묶어 다룬다.

§ 01 법인세 과세 체계 — 그 해 수익과 비용이 갈리는 자리 과세 체계

법인세는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한 해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다. 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그 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한다. 그 다음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한다. 한 줄로 적으면 "법인세 = (그 해 수익 - 비용) × 세율"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누진세율이라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여기서 핵심은 두 항목의 자리다. 그 해 수익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이고, 비용은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회사가 **비용으로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줄어든다**. 따라서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가의 자리가 법인세 계산의 결정적 갈림이다. 본 단원의 핵심인 감가상각과 이자 공제가 모두 이 비용 인정의 자리에 자리한다.

§ 02 감가상각 — 매출-비용 매칭의 자세 감가상각

감가상각(減價償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자리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세다. 기계·건물·차량 같은 유형 자산은 사용에 따라 닳고, 기술 진보로 낡아져 가치가 줄어든다. 이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회계의 기본 원칙이 **매출-비용 매칭(matching)**이다. 한 자산이 매출에 기여하는 기간에 걸쳐 그 자산의 비용도 분산되어야 한다는 자세다. 감가상각은 이 매칭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다.

일시 비용 처리

매칭이 깨진다

100억을 1년차에 한꺼번에

1년차에만 큰 비용, 이후 9년은 비용 없이 매출만 잡힌다.
회사의 실제 경영 상태가 왜곡되어 보인다.

감가상각 (정액법)

매칭이 맞춰진다

100억을 10년에 나눠

매년 10억씩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과 비용이 같은 시기에 잡혀 실제 경영 자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매칭 원칙이 잘 지켜지면 세 가지 자리가 정직하게 드러난다. 첫째, 그 해의 실제 이익이 사실대로 잡힌다. 둘째, 같은 자산을 가진 회사들 사이의 비교가 정확해진다. 셋째, 법인세 부담이 시기별로 고르게 나뉘어 회사의 자금 흐름이 안정된다. 감가상각은 단순한 회계 기교가 아니라 회사의 정직성과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자세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비용 처리의 결이 다시 갈린다. 시장이 매기는 속도와 세법이 정한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이 차이의 자리에서 정책의 자세가 만들어진다. 다음 § 03·§ 04가 바로 이 갈림을 다룬다.

02

두 감가상각과 가속상각

시장 가치와 시간적 이연

§ 03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 감가상각

두 자세

감가상각에는 두 자세가 있다. **경제적 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가 줄어드는 자세다. 자동차를 사서 1년이 지나면 시장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경제적 감가상각이다. 사용 시간·강도·기술 변화·시장 수요에서 결정되며 매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세법이 정한 표준화된 방식·기간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는 자세다. 자산 종류별로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고(기계 10년·건물 20년 등), 그 기간에 걸쳐 정해진 방법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대표 방법이 두 가지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계상한다. 100억 원 기계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매년 10억 원이다. **정률법**은 매년 남은 장부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계상한다. 처리하는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자리로, 가속상각의 한 형식이다. 두 감가상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빠르게 가치가 떨어진 자산이 세법상 천천히 비용으로 인식되거나 그 반대가 가능하다. 이 차이의 자리에서 세제 정책이 만들어진다.

§ 04 가속상각 — 세금의 시간적 이연

가속상각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은 자산의 사용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계상하는 자세다. 정률법·이중채감법 같은 방식이 모두 가속상각의 한 자리다. 가장 결정적 효과는 **법인세의 시간적 이연**이다. 한 자산의 총 감가상각액은 정액법이든 가속상각이든 결국 같다(자산 취득 원가). 그러나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느냐가 다르다.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초기 몇 년에 비용이 크게 잡혀 법인세가 줄어들고, 후기에는 비용이 적게 잡혀 법인세가 늘어난다. 총 법인세는 같지만 시기가 앞당겨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루는 효과**다. 그 동안 미뤄진 돈을 다른 자리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제상 이익이다. 국가가 이를 허용하는 까닭은 **신규 투자 유인**이다. 새 기계·설비에 투자한 기업이 초기에 세제 혜택을 받으면 자금 부담이 줄어 투자가 활성화된다.

정액법과 가속상각 한눈에

구분	정액법	가속상각
비용 인식 방식	매년 같은 금액	초기 많이, 후기 적게
총 비용	자산 취득 원가	자산 취득 원가 (동일)
초기 세 부담	일정	줄어듦
실질 효과	중립	세금의 시간적 이연 (유리)

숫자로 풀어 보면 효과가 또렷이 잡힌다. 100억 원 기계, 내용 연수 10년, 세율 25%로 가정하자. 정액법이면 매년 10억이 비용으로 잡혀 매년 2.5억의 세금이 절약된다. 가속상각이면 1년차에 20억 이상을 비용으로 잡아 그 해 5억 이상이 절약된다. 후기로 가면 비용이 줄어 절약 효과도 작아진다. 총 절약액은 같지만 초기 절약분으로 다른 자리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회사에 유리하다.

가속상각은 일종의 정책 도구이기도 하다. 국가가 새 기계·설비 투자를 늘리고 싶을 때 가속상각의 폭을 키우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투자 과열을 식혀야 할 때는 폭을 좁힌다. 같은 100억 자산이라도 정책에 따라 비용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자리다.

03

이자 공제와 자본 구조

부채의 세금 방패와 출제 사례

§ 05 이자 공제 — 부채의 세금 방패

이자 공제

회사는 자금을 **자기자본**(주주 출자)과 **부채**(은행 차입·사채)의 두 자리에서 조달한다. 두 자리의 비용은 세제상 다르게 다뤄진다. 부채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 표준을 줄인다. 그러나 자기자본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주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만드는 자세가 **부채의 세금 방패(tax shield)**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채로 조달하면 법인세가 줄고,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면 그 자리가 없다. 다만 부채에는 결정적 위험이 있다. 이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사정이 나빠지면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 세금 방패와 파산 위험의 균형이 자본 구조 결정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은 과도한 부채 의존을 막기 위해 이자 비용 산입에 한도를 둔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간 차입을 통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자세다.

평가원 출제 사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부 국가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다. **그 해 수익 - 비용 = 과세 표준 → ×세율 = 법인세**. 비용을 키우는 두 자리가 감가상각과 이자 공제다. 함정 단골은 "가속상각으로 총 법인세가 줄어든다", "배당도 비용이다", "감가상각은 시장 가치만 따른다" 같은 한 칸 비틀기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계산식

법인세 = (그 해 수익 - 비용) × 세율. 비용이 클수록 세금이 적다.

02 감가상각

자산 가치 감소를 매년 비용으로 분산, 매출-비용 매칭의 도구.

03 두 자세

경제적(시장 가치) vs 세법상(표준 방식·기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04 가속상각

총 비용은 같으나 초기에 많이 잡아 세금을 미루는 효과.

05 이자 공제

이자=비용, 배당=비용 아님. 부채의 세금 방패가 작동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계산식 외우자

(그 해 수익-비용)×세율. 계산 문항의 출발점이다.

02 가속상각 함정

총 비용은 같다. 시기만 다르다. 줄어든다고 답하면 함정.

03 이자 vs 배당

이자=비용, 배당=비용 아님. 부채 vs 자기자본 비교의 핵심.

04 2021 6월 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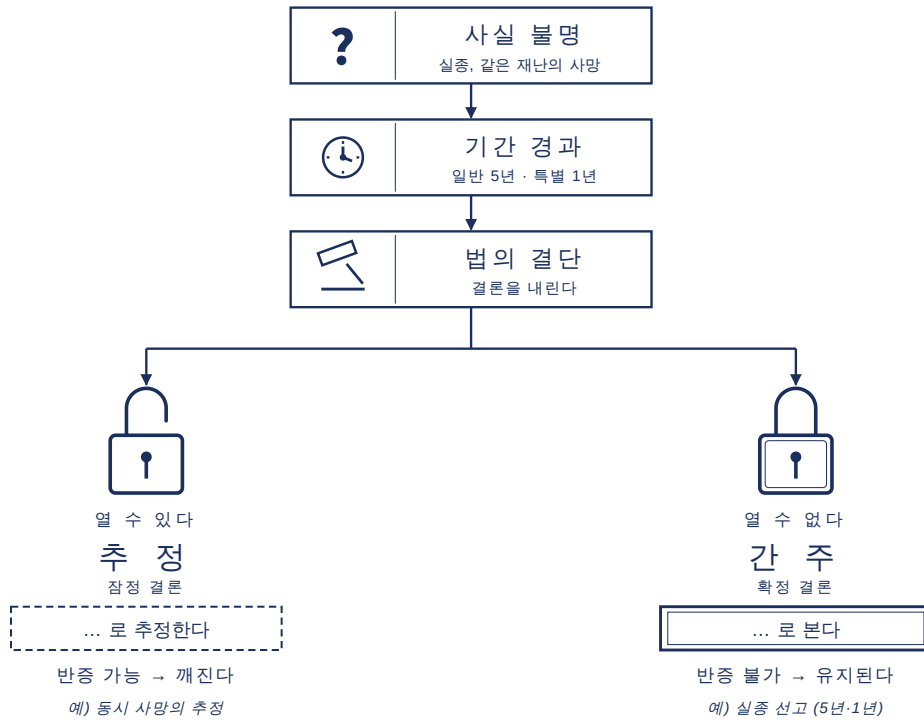
법인세 회피·디지털세 지문을 복습해 출제 양상을 익히자.

함께 볼 단원

조세 회피 실질과세

조세 법률주의·실질과세 원칙·다국적 기업의 우회 거래를 함께 보면 법인세 회피와 세제 대응의 자리가 한눈에 잡힌다.

사회·문화 9강



법적 의제

간주·추정·의제 — 법이 사실을 정리해 결론을 내리는 자세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62	영역	사회·문화 / 민법
주제	법적 의제, 추정, 간주, 반증, 실종 선고	연계	2026학년도 수능 보증과 계약 해석



실종된 지 10년, 법은 그 사람을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사망했다고 보아야 할까.

01

법적 의제의 자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한 사람이 깊은 산에서 실종된 지 10년이 지났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생존의 흔적도 없다. 그 사람을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할지 사망했다고 보아야 할지, 사실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상속, 배우자의 재혼, 보험 정리 같은 자리들은 결론이 나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자리에서 법이 결론을 내리는 입법 기술, 이것이 바로 **법적 의제**의 자리이다.

§ 01 법적 의제란 무엇인가 정의

법적 의제는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사실임에도 법이 특정 사실을 그렇게 있다고 다루는 입법 기술이다. 한 줄로 줄이면, 법이 사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다.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법적 안정성**이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 둘째, **효율성**이다. 매번 모든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분쟁 해결이 너무 늦어진다. 셋째, **형평성**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법적 의제는 다시 두 자리로 나뉜다. 반증으로 깰 수 있는 **추정**과, 반증으로 깰 수 없는 **간주(의제)**이다.

일상 비유 1

출석 호명
손을 들지 않으면 일단 결석

출석을 부를 때 손을 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그 학생이 화장실에 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결석으로 다룬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나중에 증명하면 결석이 출석으로 바뀐다. 추정의 결이다.

일상 비유 2

학칙의 결석 한도
30회 결석이면 졸업 불가

한 학기 30회 이상 결석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학칙이 정해 두면, 본인이 사정을 아무리 증명해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을 따져 결과를 뒤집는 자리가 아예 닫혀 있다. 간주의 결이다.

§ 02 추정의 자리 - 깰 수 있는 잠정 결론 반증 허용

추정(推定)은 어떤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이 일정한 다른 사실로부터 그 사실을 일단 그렇게 있다고 보는 자리이다. 핵심은 **잠정적**이라는 점이다. 추정은 절대적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며,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면 깨진다. 추정의 가장 큰 효과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보통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그 사실을 추정해 두면, 그 추정을 받아들이는 쪽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진다. 곧 반증의 자리가 만들어진다.

민법 제30조

동시 사망의 추정
같은 재난, 사망 순서 불명

2인 이상이 같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가족이 비행기 사고를 함께 당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은 일단 동시 사망으로 보고 상속을 정리한다. 의학적 증거로 시점 차이를 입증하면 추정은 깨진다.

민법 제844조

친자의 추정
혼인 중 임신한 자녀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친자 관계를 다투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곧 다른 길로는 깨지지 않지만, 법이 정한 길을 따르면 반증이 가능한 자리이다.

02

추정과 간주의 갈림

반증을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 03 간주의 자리 — 깎 수 없는 확정 결론

반증 불허

간주(看做)와 **의제(擬制)**는 같은 결의 어휘이다. 둘 다 법이 어떤 사실을 명확히 그렇다고 보고, 그 결정에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어도 법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자리를 가리킨다. 법조문에서는 **본다, 간주한다** 같은 표현으로 등장한다. 간주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번 간주가 적용되면 그 효과는 확정되며, 당사자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도 법적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곧 간주는 법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자리이다.

민법 제15조

추인 간주

기간 안 응답 없으면 추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일정 기간 안에 응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면 법은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입증되어도 추인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28조

실종 사망 간주

기간 경과 후 사망 시점 확정

실종 신고를 받은 자는 일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간주의 자리이다. 실종자가 사실은 살아 있었다고 입증되어도 그 사이의 법적 효과는 일정 범위에서 유지된다.

§ 04 추정과 간주, 결정적 차이

비교

추정과 간주는 모두 사실을 정하는 입법 기술이지만, 효과의 결정적 차이는 **반증을 허용하는가**의 자리에 있다.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므로 잠정적이고, 간주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확정적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분쟁의 결과를 정반대로 만드는 자리이다. 같은 사실이라도 법이 추정한다고 정해 두었는지 본다고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반증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추정 대 간주 비교

구분	추정	간주·의제
법조문 표현	...로 추정한다	...로 본다, ...로 간주한다
결론의 성격	잠정적	확정적
반증 허용	가능 (반증으로 깨짐)	불가능 (반증으로 깨지지 않음)
입증 책임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쪽	입증 자체가 무의미
대표 사례	동시 사망의 추정, 친자 추정	실종 신고, 추인 간주

시험에서는 이 두 자리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정답 선지의 출발점이 된다. 추정한다는 표현이 보이면 깎 수 있는 자리, 본다·간주한다는 표현이 보이면 깎 수 없는 자리로 한눈에 분류해 두자. 평가원이 함정으로 자주 쓰는 자리는 두 가지다. 첫째, 추정인데 깎 수 없다고 진술하는 선지. 둘째, 간주인데 반증으로 깎 수 있다고 진술하는 선지이다. 어휘만 정확히 보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03

실종 신고와 평가원의 자리

가장 유명한 법적 의제, 그리고 출제 길목

§ 05 실종 신고 — 가장 유명한 법적 의제

대표 사례

실종 신고는 사람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간은 두 갈래다. **일반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특별 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에 처한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특별 실종은 사망 가능성이 높아 기간이 더 짧다. 실종 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일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본다**는 표현이 등장하므로 이는 간주의 자리이다. 사망 시점은 일반 실종은 5년 만료 시점, 특별 실종은 위난 종료 시점이며, 이때부터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민법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지만, 신고를 신뢰하고 이뤄진 거래는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어 모든 효과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지지 않는다.

평가원 지문에 등장한 간주

2026학년도 수능 보증과 계약 해석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평가원 본시험에서 법적 의제 자체가 직접 다루진 적은 아직 없지만, **본다·간주**의 자리는 민법 지문에 이미 그대로 등장한 적이 있다. 인과 사슬은 단순하다. **생사 불명 → 기간 경과 → 사망 간주 → 상속 개시**의 흐름이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다. 첫째, 추정과 간주를 뒤바꿔 반증으로 깰 수 있다고 진술하는 선지. 둘째, 실종 신고 취소로 모든 거래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법적 의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 법이 결론을 내리는 입법 기술이다.
- 02 추정**
잠정 결론, 반증을 허용, 입증 책임이 반대 측으로 넘어간다.
- 03 간주·의제**
확정 결론,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 04 실종 신고**
일반 5년·특별 1년, 사망 간주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 05 신고 취소**
실종자가 돌아오면 취소 가능, 신뢰 보호로 일부 효과는 유지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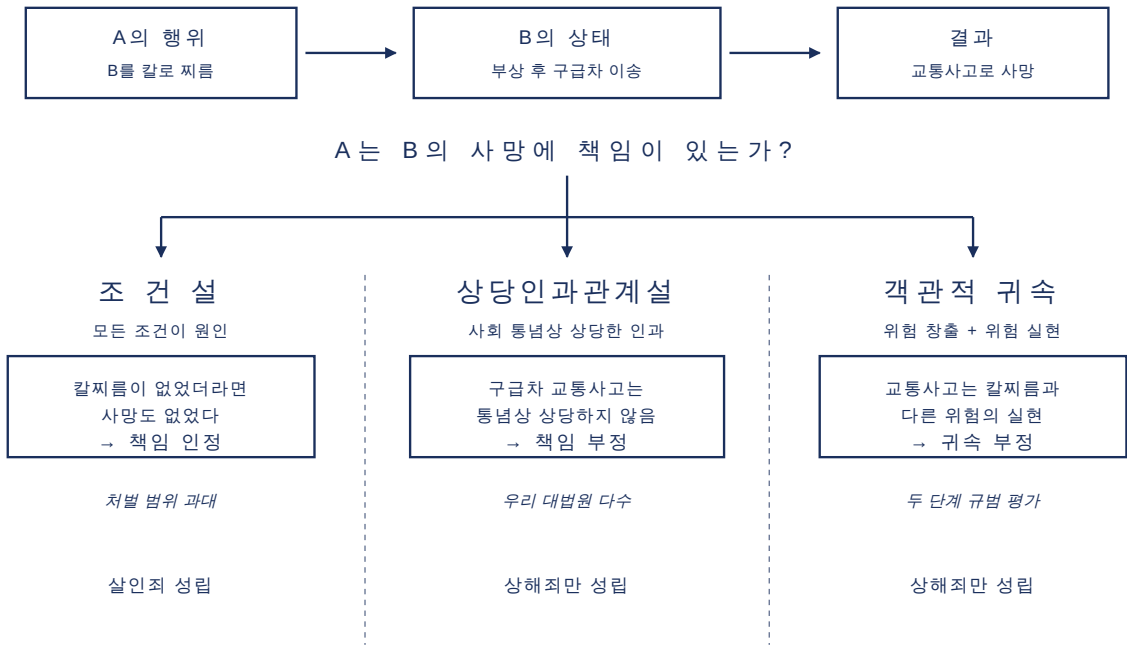
<p>01 어휘 표현 먼저 외운다 추정한다와 본다·간주한다, 이 두 표현이 사례 문항의 출발점이다.</p>	<p>02 반증 가능 여부 한 줄로 추정은 깰 수 있고 간주는 깰 수 없다. 함정 선지의 단골 자리이다.</p>	<p>03 실종 신고 기간 정리 일반 5년, 특별 1년. 사망 간주 시점과 취소 효력을 함께 외운다.</p>	<p>04 민법 기출과 묶어 본다 2026 수능 보증 지문, 2019 6월·9월 모평 사법 지문을 함께 익힌다.</p>
--	---	---	---

함께 볼 단원

민법 도식
요건과 효과

착오 승금과 혼인의 법적 요건을 함께 보면 민법의 도식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0강



같은 사건이라도 자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

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객관적 귀속 — 책임을 묻는 세 자세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262	영역	사회·문화 / 형법
주제	인과관계, 조건설, 상당인과관계 설, 객관적 귀속, 허용된 위험	연계	2022학년도 6월 모평 베카리아의 형벌 이론



A가 B를 칼로 찌렀고 B가 구급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A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01

인과관계의 출발

결과범에서 형법은 왜 원인을 묻는가

A가 B를 칼로 찔러 다치게 했다. B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 교통사고가 나서 B가 사망했다. A는 B의 사망에 대해 살인으로 처벌되어야 할까. 직관적으로는 망설여진다. A의 칼찌름은 분명 사망에 기여했지만, 직접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다. 그런데 A가 찌르지 않았다면 B는 그 구급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고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A의 칼찌름이 사망의 원인일까. 이 한 가지 사례에서 형법의 가장 깊은 물음, 곧 **인과관계 이론**이 시작된다.

§ 01 인과관계는 왜 문제인가 결과범

형법상의 범죄는 두 결로 나뉜다.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폭행죄나 음주운전이 여기 든다. **결과범**은 행위와 함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며 살인죄·상해죄·재물 손괴죄가 여기 든다.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형법은 한 가지 결정적 질문을 던진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매우 복잡하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무수히 많은 조건의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원인으로 인정하고 어디부터 제외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세우려는 자세가 바로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이다.

거동범

행위만으로 성립
결과를 묻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 폭행죄, 음주운전이 대표 사례이다.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결과범

행위 + 결과
인과관계가 결정적

행위와 함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살인죄(사망), 상해죄(상해), 재물 손괴죄(손괴)가 대표 사례이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처벌의 출발점이다.

§ 02 조건설 — 모든 조건은 원인이다 등가설

조건설(條件說)은 인과관계 이론 가운데 가장 단순한 자세이다. 결과 발생에 조건이 된 모든 행위를 원인으로 본다.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가 성립하면 그 행위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건설은 모든 조건의 등가성을 강조해 **등가설**(等價說)이라고도 부른다.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행위 사이에 우열이 없으며 똑같이 원인이라는 자세이다.

강점

단순하고 명확하다
기계적 판단이 가능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없었는가만 따지면 된다. 판단자의 주관의 개입이 거의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조건설의 큰 매력이다.

약점

인과가 무한 확장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위 사례에서 A의 칼찌름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A의 출생, 부모의 만남까지 모두 원인이 된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02

인과의 범위를 좁히는 두 자세

통념의 잣대와 규범의 잣대

§ 03 상당인과관계설 — 통념상 상당한 인과만 대법원 다수설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조건 관계가 있는 행위 가운데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한 줄로 줄이면, 그 행위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 상당하다고 일반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자세이다. 핵심은 상당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은 어떤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과 일반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다. **절충설**은 행위자가 알았던 사정과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절충설에 가까운 상당인과관계설을 다수 채택해 왔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칼에 다친 사람이 구급차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A는 사망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된다. 강점은 인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처벌 범위를 적절히 묶는다는 점이고, 약점은 상당한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판단자의 주관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 04 객관적 귀속 이론 — 인과와 귀속을 나눈다 규범적 평가

객관적 귀속 이론(客觀的 歸屬 理論)은 독일 형법학에서 발전한 자세로, 우리나라 학계 일부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자연적 사실로서의 인과관계는 조건설의 자세로 단순히 확인하되,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규범적 평가**로 판단한다. 곧 인과관계와 귀속을 두 갈래로 나눈다는 것이다. 판단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위험 창출**이며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만들었는가를 묻는다. 두 번째는 **위험 실현**이며 그 창출된 위험이 그대로 결과로 실현되었는가를 묻는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A의 칼찌름은 분명히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만들었으니 첫 단계는 충족한다. 그러나 B의 사망은 칼찌름의 위험이 실현된 결과가 아니라 구급차 교통사고라는 다른 위험이 실현된 결과이므로 두 번째 단계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는 A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세 자세 한눈에 비교

구분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
핵심 명제	모든 조건이 원인	통념상 상당한 인과만	위험 창출 + 위험 실현
판단 기준	조건 관계 확인	일반인의 경험·통념	규범적·법적 평가
인과의 범위	매우 넓음	제한적	규범적으로 제한
약점	처벌 범위 과대	기준 모호	복잡함
채택	일부 학설	우리 대법원 다수	독일·국내 학계 일부

03

허용된 위험과 평가원의 시선

사회가 받아들이는 위험, 그리고 출제 길목

§ 05 허용된 위험 — 사회가 받아들이는 위험 귀속 부정

허용된 위험(許容된 危險)은 객관적 귀속 이론과 결을 같이하는 자세이다. 사회 생활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다면 사회는 그 위험을 일정 정도까지 받아들인다. 일상의 사례가 많다. **자동차 운전**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지만 사회는 그 위험을 인정한다. **의사의 수술**은 환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지만 표준 진료의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면 법은 그 위험을 받아들인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다치는 일도 같은 자세이다. 허용된 위험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행위는 법적으로 위험을 창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며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평가원이 다룬 형법학의 결 2022학년도 6월 모평 베카리아의 형벌 이론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원 본시험에서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이 직접 출제된 적은 아직 없지만 형법학의 사상사는 위와 같이 다뤄져 왔다. 인과 사슬은 **행위 → 조건 관계 → 통념·규범 평가 → 책임의 인정·부정**이다. 함정 단골은 조건설을 우리 대법원 다수설로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객관적 귀속에서 위험 창출만으로 귀속이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위험 실현까지 충족되어야 귀속이 인정된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결과범

행위와 함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처벌의 출발점이다.

02 조건설

모든 조건이 원인, 단순·명확하지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03 상당인과관계설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인과만 인정, 우리 대법원 다수설.

04 객관적 귀속

위험 창출과 위험 실현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귀속이 인정된다.

05 허용된 위험

운전·의료·스포츠처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위험은 귀속에서 제외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세 자세 한 줄 명제

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객관적 귀속의 핵심 명제를 한 줄씩 외운다.

02 같은 사례 다른 결론

들어가며 사례를 세 자세로 각각 판단하는 연습이 출제의 핵심이다.

03 두 단계 분리해 외우기

객관적 귀속의 위험 창출과 위험 실현은 둘 다 충족해야 한다.

04 허용된 위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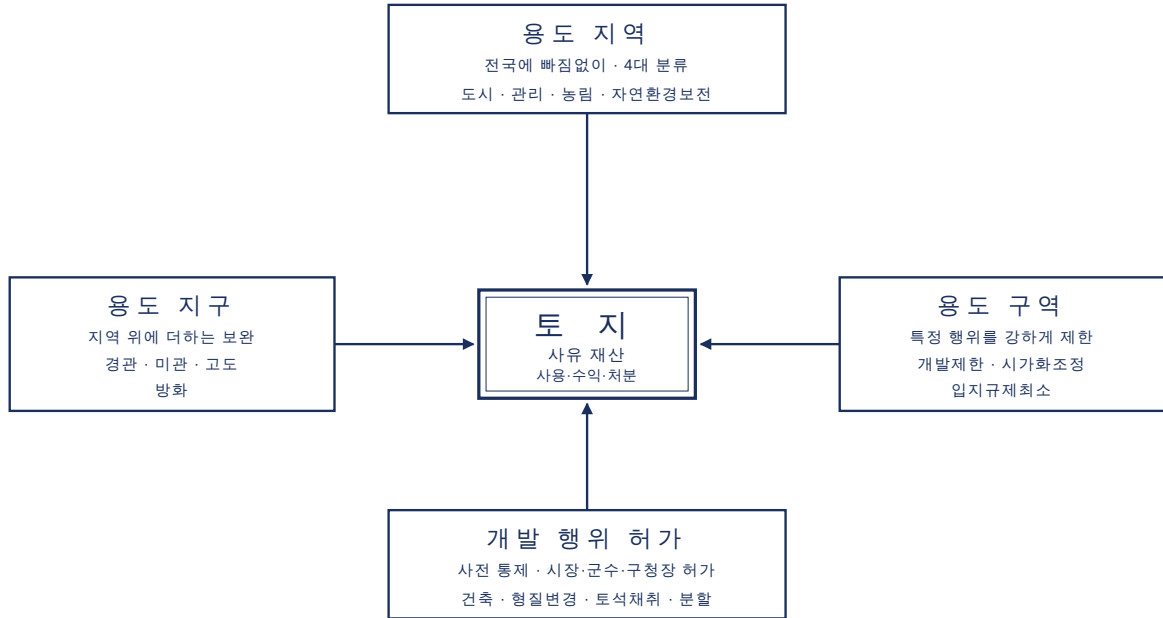
운전·의료·스포츠 세 사례를 외우면 보기 사례 문항이 쉬워진다.

함께 볼 단원

법의 도식 요건과 효과

법적 의제(9강)와 함께 보면 형법·민법의 요건·효과 도식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1강



토지 위에 행정 이 그어 둔 네 겹의 규제

토지 행정과 국토 이용 규제

용도 지역·지구·구역과 개발 행위 허가 — 사유 재산과 공공복리의 균형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36	영역	사회·문화 / 행정법
주제	토지 행정, 용도 지역, 용도 지구·구역, 개발 행위 허가, 비례 원칙	연계	2020학년도 9월 모평 소유권 양도와 공시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푸르렀던 산자락이 어느 날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면 어떨까.

01

토지 행정의 출발

사유 재산과 공공복리, 그리고 4대 용도 지역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거나 푸르렀던 산자락이 어느 날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면 어떨까. 토지는 한 사람의 사유 재산이지만 동시에 한 도시와 한 나라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행정의 미리 정해 둔다. 이 일이 바로 **토지 행정**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토지 행정의 무게는 더 또렷해진다.

§ 01 토지 행정의 목적 — 두 명제의 균형 헌법 제122조

토지 행정의 출발점은 두 명제의 균형이다. 첫째, 토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 재산**이며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둘째, 토지는 동시에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생활 토대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한 줄이 토지 행정의 뿌리이다. 토지 행정은 네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토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알맞은 곳에 알맞은 용도를 배치한다. **균형 있는 발전**은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 **환경 보전**은 자연환경과 농지를 일정 한도 안에서 보호한다. **공공복리 증진**은 도로·공원·학교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한다.

사유 재산

토지 소유자의 자유

사용 · 수익 · 처분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으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토지의 한쪽 면이다.

공공의 자산

한정된 국토 자원

효율 · 균형 · 환경 · 공공복리

토지는 모든 국민의 생활 토대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토지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정할 수 있다.

§ 02 용도 지역 — 전국을 네 갈래로 나눈다 국토계획법

국토 이용 규제의 기본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다. 이 법은 전국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네 갈래로 나눈다. **도시지역**(인구·산업 밀집), **관리지역**(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환경 보전에 준하는 곳), **농림지역**(농업·임업),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생태계 보전)이다. 이 네 갈래는 서로 겹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어느 하나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의 네 갈래로 세분된다. 용도 지역의 핵심 효과는 두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며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법령으로 정해진다. 둘째는 **건축물의 규모 제한**이며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과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상한이 정해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의 세분

네 갈래 토지 용도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 상점·사무실이 모이는 곳, 공장이 들어서는 곳,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곳으로 다시 네 갈래 나뉜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느 토지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규제가 작동한다.

규모 제한의 두 잣대

건폐율과 용적률

평면과 부피의 상한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로 토지를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02

보완 규제와 사전 통제

지역 위의 지구·구역,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 03 용도 지구·구역 — 지역만으로 부족한 곳 보완 규제

전국을 네 용도 지역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토지의 다양한 사정을 모두 담을 수 없다.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어떤 곳은 경관 보호가 더 필요하고, 어떤 곳은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정을 담아내는 보완 규제가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더해지는 보완 규제이다. **경관지구**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며,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제를 더한다. 한 토지가 동시에 여러 용도 지구에 속할 수 있다. 용도 구역은 특정 행위를 강하게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제한구역**(흔히 그린벨트)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며 신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용도 구역에 든다.

용도 지역 · 지구 · 구역 비교

구분	성격	대표 종류
용도 지역	전국 토지에 빠짐없이 적용되는 기본 분류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위에 더해지는 보완 규제	경관·미관·고도·방화지구
용도 구역	특정 행위를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 04 개발 행위 허가 — 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 5대 기준

국토계획법은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다. 일상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토지 위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온다. 허가 기준도 다섯 가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첫째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둘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셋째 주변 환경·경관·미관·문화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넷째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적절할 것, 다섯째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다. 이 다섯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가 나온다.

허가 5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허

- ①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② 계획사업 시행 무지장 ③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무악영향 ④ 기반시설·용지 확보 적절 ⑤ 위해 발생 우려 없음. 다섯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무허가 사후 통제

네 단계의 강제

시정 → 강제금 → 고발 → 대집행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면 행정청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로 대응한다. 무허가 건축물에는 **행정 대집행**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시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03

계획·비례 원칙과 평가원의 시선

토지 이용 조정, 사유재산권의 한계, 출제 길목

§ 05 토지 이용 조정과 비례 원칙

계획·통제

토지 행정은 세 층의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각 지자체는 20년 단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큰 그림을 정하고,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 등)의 결정을 담는다. 한 블록이나 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더 세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토지 행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비례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적합성**(목적과 수단의 적합), **필요성**(다른 수단이 가능하면 먼저 사용), **상당성**(공익과 사익의 균형)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위헌·위법이다. 손실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 보상이 따른다.

평가원이 다룬 토지 영역의 결

2020학년도 9월 모평 소유권 양도와 공시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토지 행정의 평가원 본시험에 직접 출제된 적은 아직 없지만 부동산·등기·정책 수단은 이미 다뤄져 왔다. 인과 사슬은 **토지 소유(등기) → 용도 지역·지구·구역 → 개발 행위 허가 → 행위의 허용·제한**이다. 함정 단골은 용도 지역과 지구를 같은 것으로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5대 기준 중 한두 가지만 충족해도 허가가 난다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토지 행정**
사유 재산과 공공복리의 균형을 추구하며 헌법 제122조가 근거이다.
- 02 용도 지역**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전국 토지는 반드시 한 곳에 속한다.
- 03 지구·구역**
지역 위에 더해지는 보완 규제와 특정 행위를 강하게 막는 규제이다.
- 04 개발 허가**
건축·형질변경·토석채취 등에 다섯 기준 모두 충족 시 허가된다.
- 05 비례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위헌·위법 규제이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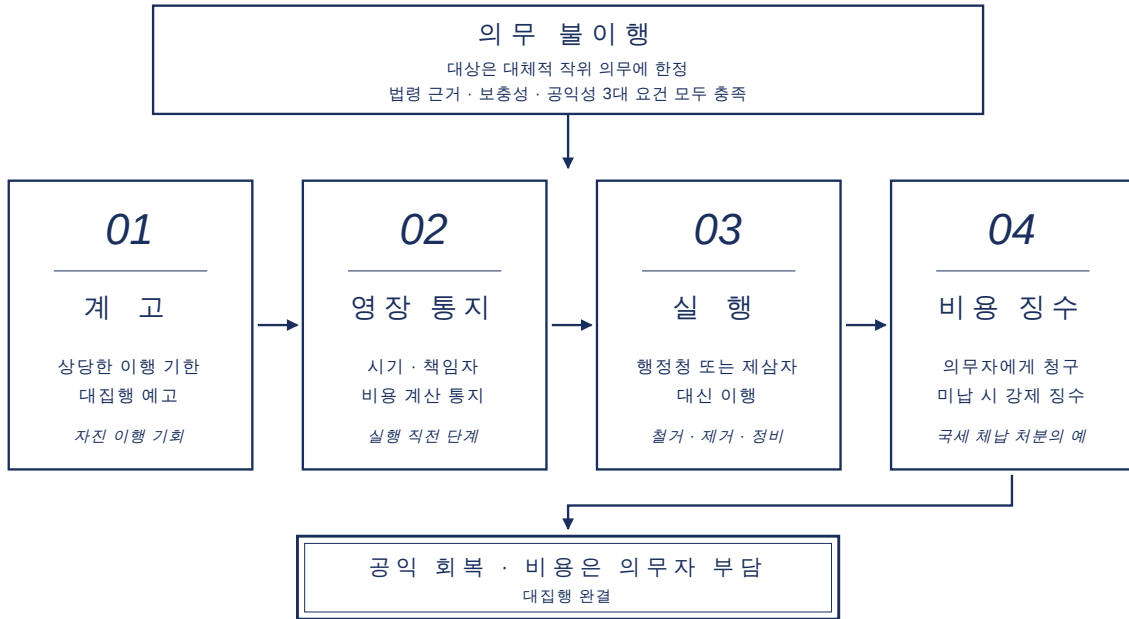
<p>01 4대 지역 외우기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한 줄로 외우면 사례 문항이 풀린다.</p>	<p>02 지역·지구·구역 구별 비교표를 머리에 그려 두면 비슷한 어휘 함정 선지를 피할 수 있다.</p>	<p>03 허가 5대 기준 보기 사례에 한두 기준이 빠진 상황이 자주 나오니 다섯 모두 외운다.</p>	<p>04 비례 원칙 3요건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은 외적 준거 보기의 단골 잣대이다.</p>
--	--	--	--

함께 볼 단원

행정 도식
사전과 사후

행정 대집행 제도(3강)와 함께 보면 토지 행정의 사전·사후 통제가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2강



의무는 행정청이 대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행정 대집행 제도

계고에서 비용 징수까지 — 행정청이 직접 강제 집행하는 네 단계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18	영역	사회·문화 / 행정법
주제	행정 대집행, 대체적 작위 의무, 4단계 절차, 법치 행정	연계	2019학년도 수능 채권과 계약 해제, 2026학년도 수능 보증



도심 한복판 무허가 건축물, 건물주가 자진 철거를 거부한다면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1

행정 대집행의 출발

왜 필요한 제도이며 어떤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가

도심 한복판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다. 행정청은 건물주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했지만 건물주는 응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통행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도시 계획을 흐트러뜨린다. 이때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소송을 걸고 강제 집행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행정청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철거하고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제도가 **행정 대집행**이다.

§ 01 행정 대집행이란 무엇인가 행정 대집행법

행정 대집행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행정상 의무를 의무자를 대신해 행정청이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행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거두어들이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다. 한 줄로 줄이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해 주고 비용을 받는 제도**이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이 근거 법령이다. 무허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도시 계획이 흐트러지고 위험 시설이 철거되지 않으면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러나 행정청이 모든 사건을 법원의 판결과 강제 집행으로 해결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시켜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제도의 본질

대신 이행 + 비용 청구
두 단계가 한 묶음

행정청 또는 제삼자가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이행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본래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행과 비용의 두 단계가 한 묶음으로 작동한다.

일상 비유

학교 청소 당번
다른 학생이 대신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 다음 수업 전에 누군가 청소를 해야 하므로 다른 학생이 대신하고, 본래 당번은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 대집행의 단순 비유이다.

§ 02 대체적 작위 의무 — 대집행의 대상 의무 유형

행정상 의무는 세 갈래로 나뉜다. **작위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라,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라 같은 명령이 그것이다. **부작위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영업 정지나 공사 중지 명령이 그것이다. **수인 의무**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이다. 이 가운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작위 의무이며, 그중에서도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대체적 작위 의무는 의무자가 직접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 제거, 위험물 제거가 대표 사례이다. 반면 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예: 부동산 인도)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의무 유형과 대집행 가능 여부

의무 유형	대표 사례	대집행
대체적 작위 의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위험물 제거	가능
비대체적 작위 의무	부동산 인도, 본인의 의료 검진 응시	불가능
부작위 의무	영업 정지 명령 준수, 공사 중지 명령 준수	불가능

02

대집행의 요건과 4단계 절차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네 단계가 시작된다

§ 03 대집행의 3대 요건

모두 충족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 셋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대집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된다. 첫째, 의무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는 대집행의 출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 이를 **보충성** 요건이라 부르며, 행정 지도나 과태료 같은 더 가벼운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집행을 곧바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셋째, 그 불이행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공익성** 요건이라 부르며, 단순히 행정청이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대집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보충성

더 가벼운 수단이 먼저

대집행은 마지막 수단

행정 지도나 과태료 부과 같은 가벼운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먼저 쓴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곤란할 때만 사용한다.

공익성

심한 공익 침해

행정청의 불편만으로는 부족

의무 불이행을 그대로 두면 공익이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불편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대집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 04 4단계 절차 — 순서가 핵심이다

계고·영장·실행·징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다음 네 단계 절차를 차례로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다. 시험에서는 순서를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정확히 외워야 한다. 첫째 **계고**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의무자에게 마지막 자진 이행 기회를 주며 대집행 영장 통지의 전제가 된다. 둘째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게 대집행의 시기, 책임자, 비용 계산을 적은 영장을 통지하는 절차이다. 셋째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시켜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이행하는 단계이며, 철거·제거·정비가 실제로 행해진다. 넷째 **비용의 징수**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4단계 절차 한눈에

단계	절차명	핵심 내용
1단계	계고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해 대집행 예고, 자진 이행 마지막 기회
2단계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시기·책임자·비용 계산을 의무자에게 통지
3단계	대집행 실행	행정청 또는 제삼자가 대신 이행, 실제 철거·제거·정비
4단계	비용 징수	의무자에게 비용 청구,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03

법치 행정과 평가원의 시선

대집행을 통제하는 원리, 그리고 출제 길목

§ 05 법치 행정 원리와 권리 구제 통제와 구제

행정 대집행은 행정청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의무자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가 작동한다.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 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명문의 법률을 근거로 하므로 이 원칙을 충족한다.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 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요건과 절차를 어긴 처분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된다. 또한 보충성과 비례성의 통제도 받으며, 불이행에 비해 과도한 침해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이 된다. 의무자는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각 단계 처분도 각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평가원이 다룬 강제 집행의 결 2019학년도 수능 채권과 계약 해제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 대집행 자체가 평가원 본시험에 직접 출제된 적은 아직 없지만 민사상 강제 집행은 2019·2026학년도 수능에 이미 다루졌다. 인과 사슬은 **의무 불이행 → 요건 검토 → 4단계 절차 → 공익 회복**이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이다. 부작위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행정 대집행과 민사 강제 집행을 같은 것으로 다루는 선지이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민사 강제 집행은 법원의 판결로 작동한다는 점이 갈림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대집행**
의무자 대신 행정청이 이행하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강제 집행이다.
- 02 대상**
대체적 작위 의무만 대상이며 비대체적 작위와 부작위 의무는 제외된다.
- 03 3대 요건**
법령 근거 · 보충성(다른 수단 곤란) · 공익성(심한 공익 침해).
- 04 4단계 절차**
계고 → 대집행 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 징수의 순서이다.
- 05 법치 행정**
법률 유보·우위, 보충성·비례성이 대집행 전 과정을 통제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의무 유형 한 줄 외우기 대체적 작위·비대체적 작위·부작위. 사례를 보고 대집행 대상인지 즉시 판별한다.	02 4단계 순서 정확히 계고 → 영장 → 실행 → 징수. 순서를 묻는 문항이 가장 자주 출제된다.	03 3대 요건 외우기 법령 근거·보충성·공익성. 외적 준거 보기에서 자주 활용되는 잣대이다.	04 민사 집행과 구별 행정 대집행과 민사 강제 집행은 주체·대상·근거가 다르다. 함정 단골.
---	---	--	--

함께 볼 단원

강제 집행
행정·민사

토지 행정의 사전 규제(11강)와 함께 보면 사전·사후 통제의 도식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3강



행정의 주체는 넷이고, 그 안에 독립의 결이 흐른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

행정 주체의 네 종류와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독립 행정 기관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40	영역	사회·문화 / 행정법
주제	행정 주체, 행정 기관, 특별 공공 행정 조직, 헌법상·법률상 독립 기관	연계	2021학년도 9월 모평 행정입법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어느 부처의 지휘도 받지 않을까.

01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

권리·의무의 귀속점과 그 주체를 위해 일하는 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장한다. 정부 예산이 결산될 때마다 감사원의 보고서가 신문에 실린다. 시민의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다. 이 조직들은 모두 행정의 영역에 있지만 일반 행정 부처와는 결이 다르다. 어떤 부처의 지휘를 받지 않고, 어떤 부처가 그들을 임의로 통제할 수도 없다. 헌법 또는 법률이 이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을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 부른다.

§ 01 행정 주체 — 네 종류의 법주체 행정 주체

행정 주체는 자기 이름으로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법주체이다. 한 줄로 줄이면 행정에 정식으로 설 수 있는 자이며, 행정 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점**이다. 행정 소송이 제기될 때 피고가 되는 것도 행정 주체이다. 행정 주체는 네 종류로 나뉜다. 첫째 **국가**는 본원적 행정 주체이며 다른 모든 행정 주체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그 주민에 자치권을 행사한다. 광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과 기초(시·군·자치구)로 나뉜다. 셋째 **공공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법인이다. 넷째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법률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그 범위에서 행정 주체가 되는 자이다.

행정 주체 네 종류

주체	성격	대표 사례
국가	본원적 행정 주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가진 지역 단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부산 동구
공공단체	행정 사무를 맡는 법인	한국방송공사, 농업협동조합, 국립대법인
공무수탁사인	법률 위탁을 받은 사인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 자동차 검사소

§ 02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 — 헛갈리지 말 것 시험 단골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은 자주 혼동되지만 분명히 다르다. 행정 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점이 되는 법주체이고, 행정 기관은 그 행정 주체를 위해 실제로 행위하는 단위이다. 국가는 행정 주체이고 그 안의 법무부·교육부 같은 부처는 행정 기관이다. 시(市)는 행정 주체이고 그 시청·구청은 행정 기관이다. 이 구분은 시험의 함정 선지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이며, 평가원의 행정입법 지문도 이 구분에서 출발한다.

행정 주체

권리·의무의 귀속점

법주체 · 소송 피고

행정 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돌아가는 법주체이다. 행정 소송이 제기될 때 피고가 되는 단위이다.
국가, 서울특별시, 한국방송공사가 대표 사례이다.

행정 기관

주체를 위해 행위

실제로 일하는 단위

행정 주체를 위해 실제로 행위하는 단위이며, 권리·의무의 귀속점은 아니다. **법무부·교육부**(국가의 기관)와 **시청·구청**(시·구의 기관)이 대표 사례이다.

02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두 걸

헌법상 독립 기관과 법률상 독립 행정 기관

§ 03 일반 행정 조직과 특별 공공 행정 조직 독립성

일반 행정 조직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산하의 부처들이다. 국무총리, 행정 각부(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처와 청이 모두 여기 든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반면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 부처와 같은 줄에 서 있지 않다. 헌법이나 특별한 법률로 설치되어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선거 관리가 행정부에 종속되면 집권 여당이 선거 운영을 좌우할 수 있고, 회계 검사가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있으면 정부 예산의 부실 집행을 견제하기 어렵다. 이런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이 조직들에 독립성을 부여한다.

§ 04 헌법상 독립 기관 —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 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근거를 둔 독립 행정 기관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사무를 처리하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한다. **세 권력의 임명권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어느 한 권력의 통제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근거를 둔 헌법 기관이다.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 검사,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선관위

3권 분산 임명
헌법 제114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헌법 기관이며, 위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감사원

대통령 소속, 직무상 독립
헌법 제97조
 대통령 소속이라는 조직상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직무 수행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이중의 결을 가진다.

§ 05 법률상 독립 행정 기관 — 위원회들 합의제

헌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만 독립성을 보장받는 행정 기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는 부패 방지·고충 민원·행정 심판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는 시장 경쟁 정책을 집행한다. 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보호 위원회도 같은 결이다. 공통된 특징은 **합의제 의사 결정 구조**이다. 한 사람의 부처 장관이 결정을 내리는 일반 부처와 달리 복수의 위원이 모여 의결하므로 한 사람의 판단이 조직 전체를 좌우하지 않으며 다양한 시각이 결정에 반영된다. 다만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닌다.

03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

법인의 형식, 그리고 사인이 행정 주체가 되는 길

§ 06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

제삼의 행정 주체

공공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법인이다. 세 유형으로 나뉜다. **영조물법인**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한국방송공사, 국립대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조합**은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단법인이다(농업·수산업협동조합). **공법상 사단·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으로 공법에 의해 설립된다. 공공단체의 결정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법률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그 범위에서 행정 주체가 되는 자이다.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학교나 사인의 자동차 검사소**가 대표 사례이며, 위탁된 행위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탁한 행정 주체에 귀속되고 책임도 그 주체가 진다.

평가원이 다룬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

2021학년도 9월 모평 행정입법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행정입법 지문은 본 단원의 행정 주체·행정 기관 구분을 정면에서 다뤘다. 인과 사슬은 **행정 주체(국가·지자체 등) → 행정 기관(부처·시청) → 행정 작용**이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이다.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을 같은 것으로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만으로 직무상 독립이 부정된다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행정 주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의 네 종류이다.

02 주체와 기관

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점, 기관은 그 주체를 위해 행위하는 단위.

03 헌법상 독립

선관위(헌법 § 114)와 감사원(헌법 § 97). 직무상 독립이 핵심이다.

04 법률상 독립

인권위·권익위·공정위. 합의제 의사 결정과 위원 신분 보장이 장치.

05 제삼의 주체

공공단체(영조물·조합·법인)와 공무수탁사인(사립학교 등)이 있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주체와 기관 구분

법무부는 행정 기관, 국가는 행정 주체. 단원 최대 함정 선지이다.

02 헌법상·법률상 구별

선관위·감사원은 헌법, 인권위·권익위·공정위는 법률. 근거 규범이 다르다.

03 합의제 효과·한계

한 사람의 판단을 막고 다양한 시각 반영, 다만 결정 속도가 느릴 수 있다.

04 공무수탁사인 사례

사립학교의 학위 수여, 사인 자동차 검사소. 사례 문항의 단골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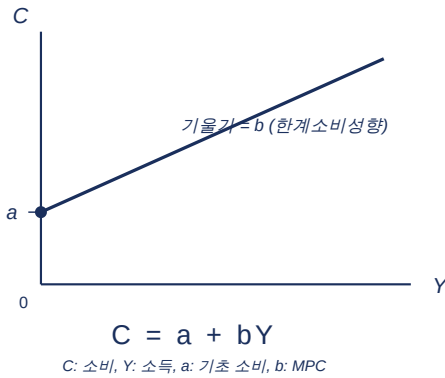
함께 볼 단원

행정 조직 주체와 기관

행정 대집행(12강)과 토지 행정(11강)을 함께 보면 행정의 조직·작용·강제 집행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4강

케인스 소비 함수
현재 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



승수 효과
한계소비성향이 만드는 경제의 흐름



한 사람의 소비 결정이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소비 함수와 소비 이론

케인스의 한 줄 식에서 시작해 거시경제의 큰 흐름까지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21	영역	사회·문화 / 거시경제학
주제	케인스 소비 함수, 한계소비성향, 승수 효과, 네 가지 소비 이론	연계	2022학년도 9월 모평 광고와 경제적 효과



용돈 10만 원을 받았을 때 8만 원을 쓴다면, 그 결정이 한 나라의 경제 전체에 어떤 흐름을 만들까.

01

케인스가 본 소비

한 줄의 식이 어떻게 거시경제의 토대가 되는가

용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자. 8만 원을 쓰고 2만 원을 저축한다면, 소득 가운데 80%를 소비에 쓴 셈이다. 이 단순한 비율이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한 나라의 총소비가 결국 사람들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 사람의 소비 결정이 모이면 그것이 한 도시,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큰 흐름이 된다.

§ 01 케인스 소비 함수 — $C = a + bY$ 절대소득가설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한 줄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C = a + bY$. 여기서 C는 소비, Y는 처분 가능 소득, a는 **기초 소비**, b는 **한계소비성향**이다. 기초 소비 a는 소득이 0이어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비이다. 한계소비성향 b는 소득이 1원 늘어났을 때 그중 얼마를 소비에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케인스는 이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보았다. 즉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소득 증가분 전부를 쓰지는 않고 일부는 저축한다는 뜻이다. 케인스는 이를 **인간의 기본적 심리 법칙**이라고 불렀다. 케인스가 보는 소비의 결정 요인은 단 하나, **지금의 소득**이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절대소득가설**이라 불린다.

a - 기초 소비

소득이 0이어도 생존을 위한 최소 지출

소득이 전혀 없을 때도 사람은 먹고 자야 한다. 기초 소비 a는 소비 함수 그래프의 **y절편**이며, 식에서 소득에 곱해지지 않는 상수 부분이다.

b - 한계소비성향

소득이 1원 늘면 그중 b만큼 소비

한계소비성향 b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0 < b < 1$ 이며 b가 클수록 사람들이 소득 증가분 가운데 더 많이 쓴다는 의미이다.

§ 02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APC · MPC

소비를 소득과 견주는 잣대는 두 갈래이다. **평균소비성향(APC)**은 전체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C/Y 로 계산된다. **한계소비성향(MPC)**은 소득의 변화분 가운데 소비의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Delta C / \Delta Y$ 로 계산된다. 케인스 소비 함수에서 한계소비성향 b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수록 점차 낮아진다. 그 까닭은 기초 소비 a 때문이다. 소득이 적을 때는 a의 비중이 커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a의 비중이 줄어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에 가까워진다. 곧 **소득이 늘수록 저축 비율이 높아진다**는 명제가 여기서 도출된다.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의 비교

구분	평균소비성향 (APC)	한계소비성향 (MPC)
정의	전체 소비 ÷ 전체 소득	소비 변화 ÷ 소득 변화
수식	C / Y	$\Delta C / \Delta Y = b$
케인스 함수에서	소득이 커질수록 낮아진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02

승수 효과와 네 이론

한 사람의 소비가 경제 전체로 퍼지는 걸, 그리고 소비를 보는 네 시선

§ 03 승수 효과 - 1/(1-b)의 마법

재정 정책

한계소비성향이 만들어 내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승수 효과**이다. 정부가 100억 원을 새로 지출했다고 해 보자. 이 100억 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계소비성향 0.8에 따라 **80억 원을 소비**한다. 그 80억 원은 또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어 다시 64억 원의 소비로 이어지고, 그 64억 원은 51.2억 원으로 이어진다. 이 연쇄가 무한히 반복되면 최종 국민소득 증가분은 $100 \times 1/(1-0.8) = 500$ 억 원이 된다. 처음 투입한 100억의 다섯 배이다. 여기서 $1/(1-b)$ 를 **승수(乘數)**라 부르며,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도 커진다. 케인스가 불황기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을 주장한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 승수 효과이다.

이론적 승수

1/(1-b)

교과서의 최대치

한계소비성향 0.8이면 승수는 5, 0.9이면 10. b가 1에 가까울수록 승수는 폭발적으로 커진다. 그러나 이는 다른 요인이 모두 없다고 가정한 이론적 최대치이다.

현실의 승수

구축 효과의 그늘

한국 1년 승수 ≈ 0.85

정부가 국채로 재정을 마련하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년 정부 소비 승수는 약 0.85로, 이론치보다 훨씬 작다.

§ 04 소비를 보는 네 시선

소비 이론 비교

케인스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다르게 답해 왔다. 네 이론은 모두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

네 가지 소비 이론의 핵심 변수

이론	학자	소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절대소득가설	케인스	현재의 소득
상대소득가설	듀젠베리	주변 사람의 소비(전시 효과)와 과거 최고 소비(톱니 효과)
항상소득가설	프리드먼	평생에 걸친 평균 소득(항상 소득)
생애주기가설	모딜리아니	일생 전체의 소득(청년기 차입, 노년기 자산 소비)

단순함의 힘

케인스의 시선

지금 이 순간의 소득

지금 받은 소득이 지금의 소비를 결정한다. 단 한 줄의 식 $C=a+bY$ 로 표현되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즉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 너머의 시선

듀젠베리·프리드먼·모딜리아니

타인·평생·생애

듀젠베리는 옆 사람과 어제의 자신을, 프리드먼은 평생의 평균 소득을, 모딜리아니는 일생 전체의 소득 흐름을 본다. 셋은 모두 케인스의 단순함을 넘어선다.

03

구축 효과와 평가원의 시선

이론과 현실 사이, 그리고 출제 길목

§ 05 구축 효과 — 승수의 그늘

현실의 제약

교과서가 보여 주는 승수 효과는 이론적 최대치이다. 현실의 경제에서는 승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큰 까닭이 **구축 효과**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정부 지출 증가분의 일부가 민간 투자 감소로 상쇄된다. 이 외에도 **수입 누출**(국내 소비가 해외 상품으로 빠져 국민소득에 기여하지 않음)과 **조세 환수**(소득이 늘면 세금으로 다시 빠져나감)가 승수를 줄인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부 소비의 1년 승수 효과는 약 0.85**, 3년 누적 효과는 약 0.98로 이론치(5)에 비해 매우 작다.

평가원이 다룬 한계소비성향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광고와 경제적 효과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2022학년도 9월 모평 광고 지문이 본 단원의 한계소비성향을 부수적으로 다뤘다. 인과 사슬은 **소득 ↑ → 소비 ↑ (b만큼) → 타인의 소득 ↑ → 다시 소비 ↑ → ... → 총 국민소득 1/(1-b)배**이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이다. 케인스 함수에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이 같다고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구축 효과를 무시하고 이론적 승수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케인스 함수

$C = a + bY$. a는 기초 소비, b는 한계소비성향($0 < b < 1$).

02 APC와 MPC

평균은 C/Y , 한계는 $\Delta C/\Delta Y$. 소득이 커지면 APC는 낮아지고 MPC는 일정.

03 승수 효과

승수 = $1/(1-b)$. $b=0.8$ 이면 100억 지출이 500억 소득으로 늘어난다.

04 네 이론

케인스(현재), 듀젠베리(타인·과거), 프리드먼(항상), 모딜리아니(생애).

05 현실 승수

구축 효과·수입 누출·조세 환수로 실제 승수는 이론치보다 훨씬 작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수식의 뜻 새기기

$C=a+bY$ 를 외우지 말고 그래프로 머리에 그려라. 절편 a, 기울기 b.

02 APC와 MPC 구별

평균은 비율, 한계는 변화율. 케인스 함수에서 둘은 같지 않다.

03 승수 계산

b가 바뀌면 $1/(1-b)$ 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04 네 이론 매칭

보기 사례가 어느 이론으로 설명되는지를 키워드로 빠르게 판별한다.

함께 볼 단원

경제 도식 소비와 승수

행정의 사전·사후 통제(11·12강)와 함께 보면 경제와 행정의 거시 도식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5강

↑ 기대 가정 없음 · 적응적 기대



← 신축적

임금 · 가격

경직적 →

합리적 기대 ↓

한 세기의 경제학사가 네 좌표에 새겨졌다

거시경제 모형의 발전

고전학파에서 새케인스학파까지 — 한 세기의 경제학사 네 학파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22	영역	사회·문화 / 거시경제학
주제	고전학파, 케인스, 새고전학파, 새케인스학파, 합리적 기대, 총공급곡선	연계	2020학년도 6월 모평 통화 정책과 금융감독



1929년 대공황 앞에서 고전학파가 무너지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케인스학파가 다시 흔들렸을 때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새로 보아야 했을까.

01

시장의 자기 조절과 그 한계

대공황 이전과 이후, 거시경제학의 첫 분기점

1929년의 **대공황**은 경제학사의 가장 큰 분기점이었다. 그때까지 굳건했던 고전학파의 자기 조절 시장 이론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되찾는다는 가정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부가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큰 물음이 시작됐다. 이 물음 앞에 케인스가 나섰고, 다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새고전학파가 등장했으며, 1980년대 이후 새케인스학파가 두 흐름을 통합했다. 한 세기에 걸친 거시경제학의 발전이 네 학파로 정리된다.

§ 01 고전학파 —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자유방임

고전학파는 18~19세기 영국 경제학자들이 다듬어 낸 거시경제 이론의 출발점이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알프레드 마샬이 대표 학자이다. 핵심 명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명제이다. 생산이 곧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이 다시 수요로 돌아온다는 인식이다. 둘째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이다. 시장은 늘 균형을 향해 움직이며, 임금과 가격이 자유롭게 조정되면 비자발적 실업이나 만성 불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두 명제에서 결론이 나온다.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방임주의**이다. 정부의 역할은 국방·치안 같은 최소한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자세이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임금·가격이 신축적이라 경제는 늘 완전 고용 산출량을 유지하며, 가격이 변해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수직 총공급곡선으로 표현된다.

§ 02 케인스학파 — 유효 수요와 정부의 손 대공황 이후

대공황이 터졌을 때 고전학파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시장이 자기 조절을 한다면 실업과 불황은 곧 사라져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실업과 장기 불황이 이어졌다. 이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6년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펴내며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을 제시했다. 케인스의 핵심 명제도 두 가지이다. 첫째 **유효 수요의 원리**는 경제 활동의 수준이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며, 세이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은 명제이다. 사람들이 사려 하지 않으면 생산도 멈추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인식이다. 둘째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이다. 현실에서 임금과 가격은 단기적으로 자유롭게 조정되지 않으며, 그래서 시장이 균형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유효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자세이다. **정부 지출 확대, 감세, 공공사업** 같은 재정 정책이 그 수단이다. 케인스학파의 **총공급곡선은 단기에 수평 또는 우상향**이다. 임금·가격이 경직적이라 단기에 수요가 늘면 산출량과 고용이 함께 늘어난다.

고전학파의 자세

시장은 스스로

신축적 임금·가격 · 자유방임

임금과 가격이 자유롭게 조정되므로 실업과 불황은 곧 사라진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자세이다. 일상의 비유로 풀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다.

케인스학파의 자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직적 임금·가격 · 적극 개입

임금과 가격이 단기에 조정되지 않아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 조절기가 고장 났을 때 사람이 직접 난방을 켜는 모습이다.

02

합리적 기대의 도입과 통합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두 학파의 새 봉우리

§ 03 새고전학파 — 합리적 기대와 정책 무력성 1970년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실업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이 님쳤다. 이 현상은 케인스학파의 단순 모형으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이때 **로버트 루카스, 토머스 사전트** 같은 학자들이 새고전학파의 깃발을 들었다. 핵심 명제는 **합리적 기대 가설**이다. 경제 주체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사람들은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행동을 조정한다. 또한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고전학파의 전통을 잇는다. 두 명제를 합치면 **정책 무력성 명제**가 나온다. 정부가 **예측된 통화·재정 정책**을 펼쳐도 사람들이 미리 효과를 알고 임금과 가격을 조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예측되지 않은 정책만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 효과조차 사람들이 곧 학습해 사라진다. 새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은 단기에도 수직에 가깝다**. 임금·가격이 신축적이고 합리적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에 산출량은 늘 자연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이다.

§ 04 새케인스학파 — 경직성에 미시적 토대를 더하다 1980년대~

1980년대 이후 **새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경직성 인식을 합리적 기대의 미시적 토대와 결합하는 길을 열었다. **그레고리 맨큐, 데이비드 로머,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대표 학자이다. 출발점은 분명하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받아들여지, 임금과 가격이 왜 경직적인지를 미시적 행동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자세이다. 핵심 명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합리적 기대를 인정**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새고전학파의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둘째 그럼에도 **임금과 가격은 단기에 경직적**이다. 이 경직성은 자의적 가정이 아니라 미시적 이유로 설명된다. **메뉴 비용 이론**은 가격 변경 자체에 드는 비용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는 설명이고, **효율 임금 이론**은 기업이 직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위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두 명제에서 결론이 나온다. 임금·가격이 단기에 경직적이므로 **단기에는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자세이다. 다만 그 효과는 합리적 기대의 영향을 받아 제한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연 수준으로 돌아간다. 새케인스학파의 **총공급곡선은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이다.

네 학파 한눈에 비교

구분	고전학파	케인스학파	새고전학파	새케인스학파
임금·가격	신축적	경직적	신축적	경직적
기대	가정 없음	적응적	합리적	합리적
총공급곡선	수직	단기 수평·우상향	단기·장기 수직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
정부 개입	불필요	적극 개입	예측 정책 무력	단기 효과 있음

03

두 축 학파 지도와 평가원의 시선

신축·경직 그리고 기대, 그리고 출제 길목

§ 05 두 축으로 그리는 학파 지도

정리

네 학파의 위치를 머리에 그릴 가장 빠른 길은 두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가로축은 **임금·가격의 신축성과 경직성**, 세로축은 **합리적 기대의 수용 여부**이다. 고전학파는 신축성 + 기대 가정 없음, 케인스학파는 경직성 + 적응적 기대, 새고전학파는 신축성 + 합리적 기대, 새케인스학파는 경직성 + 합리적 기대의 좌표에 놓인다. 이 네 좌표가 한 줄로 정리되면 어떤 학파의 어떤 명제가 나와도 즉시 위치를 잡을 수 있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새고전학파에서 새케인스학파로, **가격 경직성**은 케인스학파에서 새케인스학파로 이어졌다.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은 새케인스학파만의 특징이며 함정 선지로 자주 등장한다.

평가원이 다룬 통화 정책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통화 정책과 금융감독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학년도 6월 모평의 통화 정책 지문은 본 단원의 케인스학파·새케인스학파가 권한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한 축을 다뤘다. 인과 사슬은 **대공황 → 케인스 → 스태그플레이션 → 새고전학파 → 두 흐름 통합 → 새케인스학파**이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을 케인스학파의 것으로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새고전학파의 것으로 진술하는 선지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고전학파

세이의 법칙과 임금·가격 신축성, 자유방임.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02 케인스학파

유효 수요의 원리와 가격 경직성, 적극 재정 정책. 단기 수평·우상향.

03 새고전학파

합리적 기대로 예측된 정책 무력. 단기에도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04 새케인스학파

합리적 기대 + 메뉴 비용·효율 임금.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

05 두 축 지도

임금·가격(신축·경직)과 기대(가정 없음~합리적)로 네 좌표.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두 축 지도 그리기

신축·경직 — 기대의 두 축으로 네 학파의 좌표를 한 번에 외운다.

02 총공급곡선 네 모양

수직(고전·새고전), 단기 수평·우상향(케인스), 단기 우상향(새케인스).

03 정부 개입 한 줄씩

불필요·적극 개입·예측 정책 무력·단기 효과 있음을 외운다.

04 메뉴 비용·효율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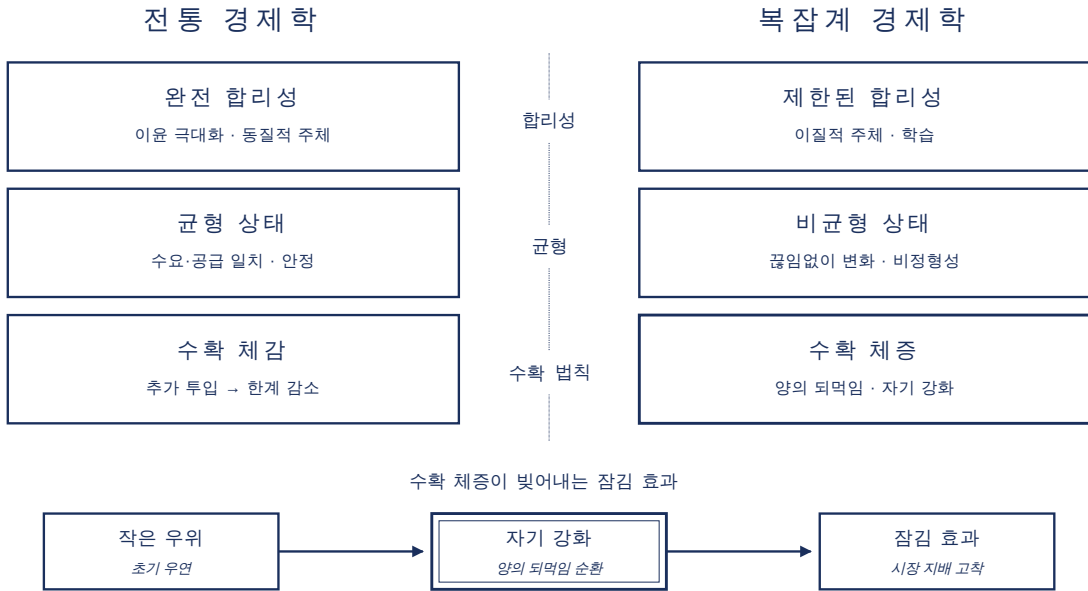
둘 다 새케인스학파의 것. 다른 학파로 진술하면 함정 선지이다.

함께 볼 단원

거시 학파 네 시선

소비 함수와 소비 이론(14강)과 함께 보면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토대와 학파 흐름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6강



초기의 작은 우연이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

복잡계 경제학

수확 체증과 경로 의존성 — 전통 경제학을 뒤집은 새 시각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48	영역	사회·문화 / 경제학
주제	복잡계 경제학, 수확 체증, 양의 되먹임, 경로 의존성, 잠김 효과, 산타페 연구소	연계	2018학년도 수능 생물학적 창발론



소니의 베타맥스가 JVC의 VHS보다 화질이 더 좋았는데, 왜 시장을 차지한 것은 VHS였을까.

01

더 좋은 기술이 진다

전통 경제학이 답하지 못한 물음, 그리고 새 출발

1980년대 비디오테이프 전쟁에서 소니의 **베타맥스**는 화질이 더 좋았다. 그런데 시장을 차지한 것은 JVC의 **VHS**였다. 더 많은 회사가 VHS 진영에 합류하자 비디오 대여점들이 VHS 테이프를 더 갖췄고, 사람들은 더 많은 영화를 보려고 VHS 플레이어를 샀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회사가 VHS 진영에 합류했다. 작은 초기 우위가 자기 강화의 순환을 거쳐 시장을 결정한 셈이다. 기술이 더 뛰어난 쪽이 이긴다는 상식이 왜 통하지 않았을까. 전통 경제학은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더 좋은 제품이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잡계 경제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경제는 합리적 균형이 아니라 작은 우연이 되먹임을 거쳐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시각이다.

§ 01 전통 경제학 vs 복잡계 경제학 — 세 갈래의 뒤집기 3대 전제

전통 경제학(신고전파 경제학)은 세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 경제 주체는 **완전히 합리적**이며 소비자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한다. 둘째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 셋째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다. 생산 요소를 추가 투입할수록 한계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어렵다. 복잡계 경제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는다. 경제 주체는 이질적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균형 상태**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확 체감이 아니라 **수확 체증**이 작동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경제학자 **브라이언 아서**(W. Brian Arthur)가 이 세 명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복잡계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통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p>합리적 균형의 세계</p> <p>합리성 · 균형 · 수확 체감</p> <p>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시장은 균형으로 수렴한다. 수확 체감 때문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어렵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토대이다.</p>	<p>비균형의 세계</p> <p>제한된 합리성 · 비균형 · 수확 체증</p> <p>주체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수확 체증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작은 우위가 자기 강화로 시장을 지배한다.</p>

세 갈래의 비교

구분	전통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경제 주체	완전 합리성 · 동질적	제한된 합리성 · 이질적
시장 상태	균형으로 수렴	비균형, 끊임없는 변화
수확 법칙	수확 체감	수확 체증, 양의 되먹임
핵심 메커니즘	음의 되먹임으로 균형 회복	양의 되먹임으로 자기 강화
최종 결과	유일한 최적 균형점	경로 의존, 비정형성

02

수확 체증과 경로 의존성

자기 강화의 메커니즘과 비효율의 고착

§ 02 수확 체증과 양의 되먹임

네트워크 효과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들거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전통 경제학의 수확 체감과 정반대이다. 수확 체증이 작동하면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이 발생한다. 작은 우위가 스스로를 강화해 점점 더 큰 우위로 확대되는 순환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대표 사례이다. 초기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프로그램이 많아지자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됐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윈도우는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 하며 수확 체증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03 경로 의존성과 잠김 효과

QWERTY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은 한번 특정 경로에 진입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임을 알게 되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향을 가리킨다. **폴 데이비드**(Paul David)와 브라이언 아서가 이론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QWERTY 자판 배열**이다. 1870년대 타자기 시대에 키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설계된 배열인데, 더 효율적인 대안(드보락 배열 등)이 등장한 뒤에도 바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배열에 익숙해진 탓에 새로운 배열로 전환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품질이 아닌 수확 체증의 관성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상을 **잠김 효과**(lock-in)라 한다. 경로 의존성이 보여 주는 핵심은 **경제의 비정형성**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하나의 최적 균형점으로 수렴한다고 보지만,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최종 결과가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는 초기의 작은 우연에 좌우된다고 본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윈도우의 결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 → 가치 ↑ → 사용자 ↑

윈도우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까닭은 화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와 소프트웨어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양의 되먹임이었다. 수확 체증의 가장 직관적인 사례이다.

QWERTY의 결

잠김 효과

비효율적이지만 못 바뀐다

드보락 배열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들은 QWERTY를 떠나지 못한다. 익숙해진 관성과 전환 비용이 비효율을 고착시킨다.

양의 되먹임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운영체제, 검색 엔진, SNS 플랫폼은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다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이다. 한번 잠김 상태에 들어간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만으로 뒤집기 어렵다. 그래서 복잡계 경제학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서도 **초기 조건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비효율이 사회 전체에 고착된다는 시각이다.

03

학술 배경과 평가원의 시선

산타페 연구소, 그리고 출제 길목

§ 04 산타페 연구소와 복잡계의 확장

학제간 융합

복잡계 경제학의 학술적 뿌리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세워진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에서 형성됐다. 물리학·생물학·경제학·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가 모여 **복잡 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를 연구하는 학제간 기관이다.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가 브라이언 아서를 산타페에 초청하면서 복잡계 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 경제학의 한계를 다루는 대안 분석 도구로 복잡계 이론이 논의되어 왔고, 경제학뿐 아니라 기술 정책·도시 계획·감염병 확산 모델링까지 확장되고 있다.

평가원이 다룬 복잡 시스템의 결

2018학년도 수능 생물학적 창발론

생명체는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

복잡계 경제학 자체는 평가원 본시험에 직접 출제된 적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생물학적 창발론**이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다.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예측 불가능한 거시 결과를 낳는다는 본 단원의 시각과 같은 결이다. 인과 사슬은 **초기 우연 → 양의 되먹임 → 자기 강화 → 잠김 효과**이다. 함정 단골은 수확 체증과 수확 체감을 같은 것으로 진술하는 선지, 그리고 경로 의존성을 잠김 효과와 같다고 단정하는 선지이다. 경로 의존성은 **원인**(초기 조건), 잠김 효과는 **결과**(비효율의 고착)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 01 **3대 전환**
전통의 완전 합리·균형·수확 체감을 복잡계가 모두 뒤집는다.
- 02 **수확 체증**
생산·사용자가 늘수록 단위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 03 **양의 되먹임**
작은 우위가 스스로를 강화해 시장 지배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 04 **경로 의존성**
초기 우연이 결과를 결정하며 잠김 효과로 비효율이 고착된다.
- 05 **비정형성**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p>01 3대 전환 외우기 합리성·균형·수확의 세 갈래에서 전통과 복잡계의 위치를 즉시 떠올린다.</p>	<p>02 되먹임 순환 그리기 작은 우위 → 자기 강화 → 시장 지배의 순환을 머릿속에 그려 둔다.</p>	<p>03 원인과 결과 구별 경로 의존성은 원인(초기 조건), 잠김 효과는 결과(비효율 고착)이다.</p>	<p>04 사례 두세 가지 VHS·윈도우·QWERTY. 사례 보기 문항의 가장 흔한 자료이다.</p>
--	--	--	---

함께 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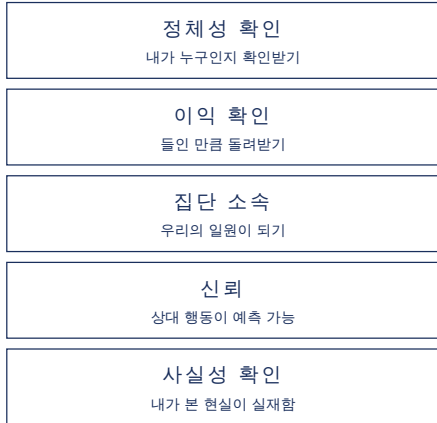
두 경제학
전통과 복잡

소비 함수(14강)와 거시경제 모형의 발전(15강)과 함께 보면 전통 경제학과 그 너머의 새 시각이 한 줄로 꿰어진다.

사회·문화 17강

다섯 교류 욕구

모든 만남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정체성 네 층위

한 사람 안에 네 모습이 함께 있다



만남마다 욕구가 깨어나고 정체성이 확인된다

교류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

터너의 다섯 교류 욕구와 정체성 네 층위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49	영역	사회·문화 / 미시 사회학
주제	조너선 터너, 교류 욕구, 정체성 네 층위	연계	평가원 사회학 출제(뒤르켐·듀이)와 인접



같은 친구를 만나도 왜 어떤 날은 만족스럽고 어떤 날은 불편할까.

01

만남에서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터너가 정리한 다섯 가지 교류 욕구

같은 친구를 만나도 어떤 날은 마음이 가득 차고 어떤 날은 묘하게 불편하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도 어떤 동료와의 대화는 활력이 되고 어떤 동료와의 대화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한 만남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는 단순히 그 사람의 호불호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하며, 그 무언가가 채워지느냐에 따라 만남의 인상이 달라진다. 미국 사회학자 조너선 터너는 그 무언가를 다섯 가지 욕구로 정리했고, 그 가운데 정체성 확인을 다시 네 층위로 펼쳤다. 한 만남을 분석하는 정밀한 잣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 01 조너선 터너와 교류 욕구 이론 이론가와 출발점

조너선 터너(Jonathan H. Turner, 1942~)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활동한 사회학자다. 그는 거대한 사회 구조를 다루는 거시 사회학과 일상의 작은 만남을 다루는 미시 상호작용 이론을 잇는 작업을 평생 해 왔다. 그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만남에는 충족되기를 바라는 기본 욕구가 있다. 이 욕구가 채워지느냐에 따라 만남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핵심 명제다. 그는 이 욕구를 **교류 욕구** (transactional needs)라고 불렀다.

거시 사회학

사회를 위에서 본다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만든다

사회 전체의 통합·해체, 제도와 규범, 계급과 분업 같은 큰 단위가 분석 대상이다. 뒤르켐의 자살론처럼 사회의 통합 정도가 개인의 자살률을 만든다는 자세가 대표적이다.

미시 상호작용

사회를 아래에서 본다

작은 만남이 쌓여 사회가 만들어진다

두 사람의 대화, 학급의 한 장면, 회식 장면의 시선 같은 작은 만남이 분석 대상이다. 터너의 교류 욕구 이론은 이 미시 상호작용을 다섯 욕구로 풀어낸다.

§ 02 다섯 가지 교류 욕구 동시에 작동하는 욕구

터너가 정리한 다섯 욕구는 일상의 모든 만남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어떤 만남에서는 정체성 확인 욕구가 가장 크게 작동하고, 어떤 만남에서는 집단 소속 욕구가 가장 절실하다. 만남의 상황, 상대와의 관계, 그날의 사정에 따라 어느 욕구가 전면에 놓이는지가 달라진다. 다섯 욕구가 모두 채워지면 만남은 깊은 만족으로 끝난다.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묘한 불편함이 남는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에만 빠져 내 정체성을 확인해 주지 않을 때, 도움을 베풀었는데 고마움이 돌아오지 않을 때, 모임에서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 만남이 어긋난다. 이 가운데 본 단원이 깊이 다루는 것은 **정체성 확인 욕구**다.

다섯 교류 욕구의 핵심과 사례

욕구	핵심 내용	일상 사례
정체성 확인	내가 누구인지 만남에서 확인받기	"넌 참 좋은 사람이야"라는 친구의 말
이익 확인	들인 만큼 또는 그 이상 돌려받기	도와준 만큼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기
집단 소속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학급 단독방에 초대받는 일
신뢰	상대 행동이 예측 가능하기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에게서 안심
사실성 확인	내가 본 현실이 진짜라는 확신	같은 사건을 친구가 똑같이 해석

02

정체성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는 네 층위

§ 03 정체성 네 층위의 모습

단원의 중심 개념

터너는 정체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 한 사람 안에는 네 층위의 정체성이 함께 있고, 각 층위는 서로 다른 곳에서 확인된다. 가장 깊은 곳에는 **핵심 정체성**이 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인식이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서 가장 자주 확인되며,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사람은 깊은 자기 의심에 빠진다.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에서 비롯된다. 성별, 인종, 민족, 세대, 계급 같은 큰 범주가 여기에 들어온다. **집단 정체성**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속한 구체적 집단에서 나온다. 가족, 학교, 학급, 직장, 동아리, 종교 단체 같은 곳이다. **역할 정체성**은 특정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이다. 어머니, 아버지, 교사, 학생, 의사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역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정체성 네 층위의 형성과 확인

정체성	형성되는 곳	확인되는 장면
핵심 정체성	가장 깊은 자아 인식	가까운 친구·가족과의 깊은 대화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범주(성별·세대·민족)	사회 일반의 시선과 평가
집단 정체성	구체적 소속 집단	학교·직장·동아리 안의 관계
역할 정체성	맡고 있는 역할	어머니·교사·학생으로서의 활동

§ 04 층위 사이의 충돌과 조정

맥락 의존성

한 사람 안의 네 정체성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한 학생이 집에서는 부드러운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급의 리더일 수 있다. 두 정체성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 충돌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을 때 학생은 자녀와 학급 리더 사이에서 잠시 어긋남을 경험한다. 터너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체성이 더 강하게 활성화될지는 그 만남의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 식사에서는 가족 안의 역할 정체성이 또렷이 활성화되고, 동아리 모임에서는 그 동아리의 집단 정체성이 전면에 선다. 사람들은 만남의 맥락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며, 이 조정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한 모습이다. 한편 네 층위 가운데 가장 깊고 안정된 것은 핵심 정체성이다. 다른 세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지만, 핵심 정체성은 깊은 자아 인식에 닿아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 정체성이 일관되게 확인되는 만남은 깊은 만족을 주며, 반대로 핵심 정체성이 부정되는 만남은 큰 상처를 남긴다.

학교 안의 한 장면

네 층위가 같이 움직인다

집단 → 역할 → 핵심까지 함께 흔들린다

학급에서 좋은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집단 정체성이, 동아리 부장을 맡으면 역할 정체성이 확인된다. 친한 친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면 핵심 정체성이 깊게 확인된다. 그러나 따돌림을 당하면 집단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핵심 정체성에게까지 닿는다.

직장 안의 한 장면

사회적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

사회적 범주에서 오는 시선이 핵심까지 닿는다

회의에서 의견이 정당하게 채택되면 역할 정체성이, 부장이 우리 팀의 핵심이라고 인정해 주면 집단 정체성이 강화된다. 한편 자신의 성별·세대 정체성이 부정적 시선을 자주 받으면 사회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핵심 정체성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이 다른 어떤 갈등보다 깊게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른 세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은 회복이 비교적 쉽지만, 핵심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기 인식 전체가 출렁인다. 한 사람의 일상은 결국 이 네 층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무대다.

03

평가원과 학습 잣대

사회학 출제 흐름과 네 가지 공부 길

§ 05 평가원 사회학 영역과의 연결

출제 흐름

터너의 교류 욕구 이론 자체는 2017~2026학년도 평가원 본시험 비문학에서 직접 출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학 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룬 지문은 평가원이 꾸준히 다뤄 온 영역이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뒤르켐의 자살론을 다뤘다. 사회 통합의 정도와 자살률의 관계가 핵심이었고, 사회학의 거대 이론이 비문학 지문으로 펼쳐진 대표 사례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듀이의 공중론과 공공 저널리즘을 다뤘다. 시민이 공적 담론에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며, 이는 본 단원의 집단·사회적 정체성과 깊이 맞닿는다.

본 단원 핵심 명제

조너선 터너 교류 욕구 이론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섯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다. 그 가운데 정체성 확인이 가장 깊으며, 핵심·사회적·집단·역할의 네 층위로 나뉜다.

만남이 시작되면 다섯 욕구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 가운데 정체성 확인 욕구가 가장 강하게 깨어나며, **만남의 맥락 → 정체성 활성화 → 욕구 충족 또는 불충족 → 만남의 만족도** 순으로 이어진다. 함정 단골은 두 가지다. 핵심 정체성이 다른 세 정체성과 똑같이 가변적이라는 진술, 그리고 만남의 맥락과 무관하게 한 정체성이 항상 우선한다는 진술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다섯 욕구

정체성·이익·집단소속·신뢰·사실성 확인이 모든 만남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02 네 층위

정체성은 핵심·사회적·집단·역할로 분화한다.

03 핵심 안정

핵심 정체성은 가장 깊고 가장 잘 흔들리지 않는다.

04 맥락 의존

같은 사람도 만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정체성이 전면에 선다.

05 층위 충돌

한 사람 안의 정체성들이 부딪치며 자기 조정이 일어난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다섯 욕구를 한 줄씩 외우자

사례 보기 문항은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어떤 욕구가 어긋났는지를 묻는 형식이 단골이다.

02 정체성 네 층위 표로 외우자

핵심·사회적·집단·역할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지 않으면 함정 선지에 걸리기 쉽다.

03 맥락 의존성을 외우자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전면에 두고 행동한다는 명제가 사례 문항의 핵심 잣대다.

04 핵심 정체성 안정성을 외우자

다른 세 정체성과의 차이를 분명히 외워 두자. 핵심 정체성의 안정성을 흐드는 진술은 단골 함정이다.

함께 볼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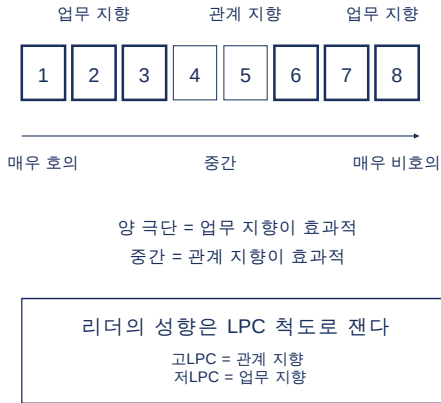
시민 참여 9강

시민이 공중을 형성하며 집단·사회적 정체성을 만드는 인접 단원이다.

사회·문화 18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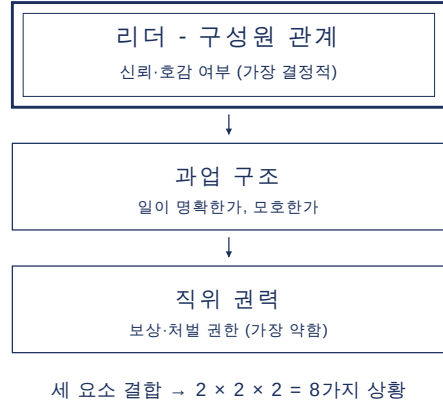
8가지 상황과 효과

호의성 연속선 위 두 유형의 효과



호의성 세 요소

중요도 순으로 결합한다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리더도 달라진다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

상황적합 이론과 효과적 리더의 잣대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09	영역	사회·문화 / 경영·심리학
주제	피들러, LPC 척도, 호의성, 상황 적합	연계	평가원 경영학 출제(2025·2026 6평)와 인접



좋은 리더는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모습일까.

01

좋은 리더의 잣대를 다시 묻다

피들러와 LPC 척도가 가르치는 두 유형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잘 챙기는 따뜻한 리더일까, 일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리더일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좋은 리더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미국 심리학자 프레드 피들러는 이 물음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좋은 리더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일에 단호한 리더가 효과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관계를 잘 챙기는 리더가 효과적이다. 이것이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Contingency Theory)이다. 이 이론은 리더의 성향이 고정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 성향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효과가 난다고 본다.

§ 01 프레드 피들러와 상황적합 이론 이론가와 출발 명제

프레드 피들러(Fred Fiedler, 1922~2017)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1938년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심리학자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학교와 워싱턴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1967년에 펴낸 **효과적 리더십의 이론**(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에서 그는 상황적합 이론을 체계화했다. 출발 명제는 단순하다. 좋은 리더의 절대 기준은 없으며, 리더의 성향과 그가 처한 상황의 호의성이 맞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리더십을 개선하려면 리더 자체를 바꾸기보다, 성향에 맞게 상황을 조정하거나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절대 기준 시선

좋은 리더는 정해져 있다
언제나 더 좋은 리더의 모습이 있다고 본다

따뜻한 리더 또는 단호한 리더가 늘 더 낫다고 본다. 후보를 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좋은 리더십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상황적합 시선

좋은 리더는 상황마다 다르다
사람보다 사람과 상황의 짝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단호한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는 따뜻한 리더가 효과적이다. 리더 후보를 바꾸기 어렵다면 그에게 맞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편이 낫다고 본다.

§ 02 LPC 척도와 두 가지 리더 유형 성향은 고정적

피들러의 첫 작업은 리더의 성향을 어떻게 잴 것인가였다. 그가 만든 잣대가 **LPC 척도** (Least Preferred Coworker, 가장 함께 일하기 어려운 동료)다. 응답자는 자신이 함께 일해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함께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 한 명을 떠올린 뒤, 그 사람을 18쌍의 형용사(친절~불친절, 협력~비협력 같은)에 1~8점으로 평가한다. 합산 점수가 64점 이상이면 **고LPC(관계 지향)**, 57점 이하이면 **저LPC(업무 지향)**로 분류된다. 가장 싫었던 동료조차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중시하는 성향이고, 가차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일을 못한 사람으로 사람으로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다. 피들러는 이 LPC 점수를 리더의 고정된 성향으로 보았다. 리더십 유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가지 리더 유형 비교

항목	저LPC (업무 지향)	고LPC (관계 지향)
LPC 점수	57점 이하	64점 이상
싫었던 동료 평가	가차 없이 부정적	비교적 호의적
가장 중시하는 것	목표 달성과 일의 성과	사람과의 관계
성향 변화	쉽게 바뀌지 않음	쉽게 바뀌지 않음
일상 비유	결과로 말하는 리더	사람을 챙기는 리더

02

상황의 호의성을 재고 짚는다

세 요소·여덟 가지 상황·적합한 리더

§ 03 상황의 호의성 — 세 가지 요소

중요도 순으로

피들러는 리더가 처한 상황을 **호의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호의성이란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그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뜻한다. 호의성은 세 요소로 결정되며, 중요도 순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구성원 관계**다. 부하들이 리더를 신뢰하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갈등이 있는가를 묻는다. 신뢰가 좋으면 호의적이고 나쁘면 비호의적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둘째, **과업 구조**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절차가 잘 잡혀 있는가, 아니면 모호하고 새로운가를 묻는다. 명확하면 호의적, 모호하면 비호의적이다. 셋째, **직위 권력**이다. 리더가 부하에게 보상과 처벌을 줄 공식 권한이 강한가, 약한가를 묻는다. 강하면 호의적, 약하면 비호의적이다.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셋 가운데 가장 작다.

호의성 세 요소의 판정 기준

요소	호의적	비호의적	비중
리더-구성원 관계	신뢰·호감	갈등·불신	가장 결정적
과업 구조	명확·정해진 절차	모호·새로움	두 번째
직위 권력	보상·처벌 권한 강함	보상·처벌 권한 약함	가장 약함

§ 04 8가지 상황과 적합한 리더십

직관에 반하는 결론

세 요소가 각각 호의/비호의로 갈리니, 가능한 상황은 $2 \times 2 \times 2 = 8$ 가지다. 피들러는 이 8가지를 호의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호의적에서 매우 비호의적까지 연속선으로 늘어놓았다. 그의 결론은 직관에 반한다. **매우 호의적인 상황과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 모두에서 업무 지향 리더(저LPC)가 효과적**이다. 매우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신뢰가 이미 두텁고 일도 명확하니, 리더가 단호하게 목표를 밀고 나가면 좋은 성과가 난다.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가 나쁘고 일도 모호하고 권한도 약하니, 일단 일을 강하게 끌어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반대로 **중간 정도로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관계 지향 리더(고LPC)가 효과적**이다. 부분적으로 좋고 부분적으로 나쁜 조건이 섞여 있으니, 리더가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다지며 협력을 끌어내야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

업무 지향이 효과적인 상황

양 극단의 호의성

매우 호의 + 매우 비호의에서 효과적

매우 호의적이면 일을 단호하게 밀어붙여 좋은 성과를 만든다. 매우 비호의적이면 일단 일을 강하게 끌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두 경우 모두 관계보다 일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관계 지향이 효과적인 상황

중간 정도 호의성

부분 좋고 부분 나쁜 조건이 섞일 때

부하의 신뢰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일이 모호하거나, 일은 명확한데 신뢰가 흔들리는 식이다. 이때 리더가 부하들과 관계를 잘 다지며 협력을 끌어내야 한 단계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이 결론의 함의는 분명하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절대 기준은 없으며, 리더의 성향과 상황의 호의성이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난다. 리더의 성향을 바꾸려 들기보다, 그 성향에 맞는 상황을 만들거나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03

평가원 출제와 학습 잣대

경영학 출제 흐름과 네 가지 길

§ 05 평가원 경영학 영역과의 연결

출제 흐름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 자체는 2017~2026학년도 평가원 본시험 비문학에서 직접 출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영학과 조직 행동을 다룬 비문학 지문은 평가원이 꾸준히 다루 온 영역이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 방식을 다뤘고,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의사 결정 구조 자체를 지문으로 펼쳤다. 평가원은 사회과학 이론의 분류 체계를 사례에 대입하게 하는 문항을 선호한다. 피들러 이론은 두 유형, 세 요소, 8가지 상황이라는 명확한 분류표로 정리되어 출제 친화적인 소재다.

본 단원 핵심 명제

피들러 상황적합 이론 (1967)

좋은 리더라는 절대 기준은 없다. 리더의 고정된 성향(LPC)과 상황의 호의성이 맞아떨어질 때 효과적 리더십이 나타난다.

한 조직의 리더십 효과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리더 성향(LPC 점수) → 상황의 호의성(세 요소 결합) → 둘의 적합성 판정 → 효과적 리더십**. 함정 단골은 두 가지다. 첫째, 양 극단(매우 호의·매우 비호의)에서 관계 지향이 효과적이라는 진술이다 (거꾸로 외우기 함정). 둘째, 리더의 성향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뀐다는 진술이다(다른 이론과 혼동 함정).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출발 명제

좋은 리더의 절대 기준은 없고, 성향과 상황의 적합성이 효과를 결정한다.

02 LPC 척도

싫은 동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면 고LPC(관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저LPC(업무).

03 호의성 3요소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직위 권력 — 중요도 순.

04 8가지 상황

세 요소 2×2×2가 매우 호의~매우 비호의의 연속선을 만든다.

05 적합성 결론

양 극단은 업무 지향, 중간은 관계 지향이 효과적이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LPC 척도 의미를 정확히

가장 싫은 동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성향을 가른다. 이 측정 방식이 모든 분류의 출발이다.

02

호의성 세 요소 외우기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직위 권력. 보기에 제시된 상황을 이 세 요소로 분해해 호의/비호의를 판정한다.

03

적합성 결론 외우기

양 극단은 업무 지향, 중간은 관계 지향.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라 함정 선지 단골이다.

04

피들러 대 다른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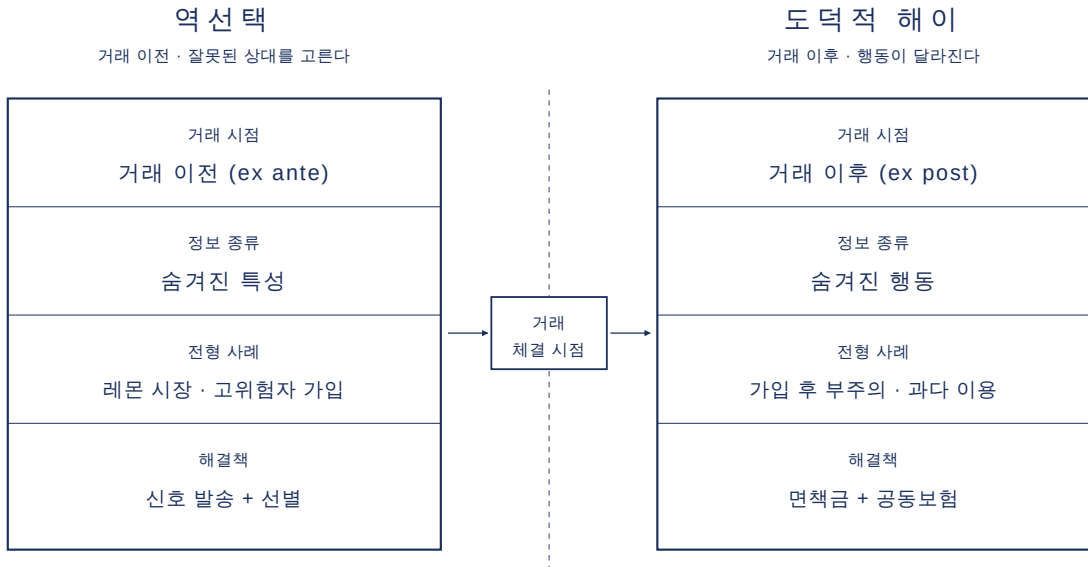
피들러는 성향을 고정적으로 본다. 허시-블랜차드 이론은 리더가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비교 문항의 핵심이다.

함께 볼 단원

의사 결정
6월 모평

평가원이 2025·2026 6월 모평에서 다룬 경영학 의사 결정 지문과 맞닿는다.

사회·문화 19강



정보 비대칭이 만드는 두 가지 시장 실패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도덕적 해이

거래 시점이 가르는 두 가지 시장 실패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114	영역	사회·문화 / 미시경제학
주제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신호·선별	연계	2017학년도 수능 직접 출제



중고차와 보험 시장은 왜 자꾸 망가질까.

01

정보가 한쪽에 쏠릴 때

정보 비대칭과 레몬 시장의 메커니즘

중고차 시장에 가 보면 좋은 차와 결함 많은 차가 섞여 있다. 그런데 사고 보면 결함 많은 차일 확률이 높다. 보험에 들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건강한 사람은 굳이 들지 않고, 위험한 사람만 든다. 게다가 가입한 뒤에는 부주의해진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거래하는 두 사람이 가진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며, 그 결과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 01 정보 비대칭과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한 원인

전통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 모형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똑같이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일이 흔하다. 중고차 판매자는 자기 차의 진짜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모른다. 의사는 환자의 병에 관해 환자보다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는 상태가 정보 비대칭이다. 정보 비대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막아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일으킨다. 경제학이 꼽는 시장 실패의 네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며, 나머지 셋은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효과다.

완전 정보 시장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본다

전통 경제학이 전제하는 이상적 시장

두 거래자가 차의 상태, 환자의 병, 가입자의 위험을 똑같이 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사물의 진짜 값을 그대로 반영하고,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비대칭 정보 시장

한쪽만 더 안다

현실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쥐면 다른 쪽은 평균 정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잘못된 상대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부르고, 시장이 효율을 잃게 만든다.

§ 02 애컬로프의 레몬 시장 모형 시장 붕괴의 메커니즘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는 1970년 논문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에서 정보 비대칭이 어떻게 시장을 무너뜨리는지를 처음으로 분명히 보여 줬다. 레몬은 미국 속어로 결함 많은 중고차를 가리킨다. 판매자는 자기 차의 진짜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모른다. 구매자는 결함 가능성을 감안해 **평균 가격**만 내려 한다. 그러면 좋은 차의 주인은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느껴 시장에서 빠진다. 시장에는 품질 낮은 레몬만 남고, 가격은 더 떨어지며, 좋은 차는 더 사라진다. 이 메커니즘이 시장 붕괴의 전형이며, 정보 비대칭이 만든 잘못된 상대 선택, 곧 역선택의 대표 사례다.

레몬 시장 붕괴의 흐름

단계	내용	결과
1단계	판매자만 차의 진짜 상태를 안다	정보 비대칭 발생
2단계	구매자는 평균 가격만 내려 한다	좋은 차에 낮은 값
3단계	좋은 차 주인이 시장을 떠난다	레몬만 남는다
4단계	평균 품질이 더 떨어진다	가격이 더 내려간다
5단계	좋은 차가 더 빠진다	시장 붕괴

같은 흐름이 보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입자의 진짜 위험을 보험사가 모르면, 평균 위험에 맞춘 보험료에 건강한 사람이 떠난다. 떠나면 가입자 평균 위험은 더 올라가고, 보험료는 더 오른다. 이 악순환이 레몬 시장의 구조와 같으며, 단원의 핵심 두 개념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이 흐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한다.

02

거래 시점이 가르는 두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본질

§ 03 역선택 — 거래 이전의 문제 숨겨진 특성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거래가 체결되기 전(사전적, ex ante) 단계에서 일어난다. 정보가 적은 쪽이 상대방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 곧 **숨겨진 특성**을 알지 못해 결국 질 낮은 거래 상대만 시장에 남게 되는 현상이다. 보험 시장에서 이 현상이 잘 보인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자신이 의료비를 많이 쓸 것을 알기에 건강보험에 들 유인이 크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가입을 꺼린다. 그러면 보험사 가입자 풀이 고위험군으로 치우치고, 보험사는 손해를 막으려 보험료를 올린다.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한 사람은 더 가입하지 않고, 가입자 풀은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며, 잘못된 상대를 고르게 되는 것이 역선택의 본질이다.

§ 04 도덕적 해이 — 거래 이후의 문제 숨겨진 행동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거래가 체결된 후(사후적, ex post) 단계에서 일어난다. 충분히 감시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거래를 맺은 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숨겨진 행동**이다. 다시 보험 시장을 보자. 자동차보험에 든 운전자는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처리해 준다는 생각에 더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신경을 덜 쓰거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도 같은 일이다. 가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입 이후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도덕적 해이의 본질이다. 같은 보험 시장에서 두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 고위험자가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은 역선택, 가입 후 부주의해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본질이 다른 두 문제가 한 시장에서 동시에 시장을 망가뜨린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한눈에 비교

기준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시점	거래 이전 (사전적)	거래 이후 (사후적)
정보 종류	숨겨진 특성	숨겨진 행동
본질	잘못된 상대를 고른다	가입 후 행동이 달라진다
보험 사례	고위험자가 더 많이 가입	가입 후 부주의해진다
해결책	신호 발송 + 선별	면책금 + 공동보험

시점, 정보 종류, 본질, 해결책이 모두 같린다. 한 시장에서 두 현상이 함께 보이더라도, 어느 단계의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구분해야 진짜 문제를 짚을 수 있다.

보험 시장의 두 문제

가입 전과 가입 후

한 시장에 두 문제가 함께 작동한다

가입 전에는 고위험자가 더 많이 가입해 역선택이 일어나고, 가입 후에는 부주의·과다 이용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같은 보험 시장이지만 시점이 다른 두 문제다.

노동시장의 두 문제

채용 전과 채용 후

같은 구조의 정보 비대칭이 펼쳐진다

채용 전에는 구직자의 능력을 회사가 모르는 정보 비대칭이 역선택을 부른다. 채용 후에는 직원이 노력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 두 시장이 같은 구조를 보인다.

03

해결책과 평가원 잣대

2001 노벨상 이론과 2017 수능 출제

§ 05 해결 방안과 평가원 출제

노벨상 이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본질이 다르므로 해결책도 다르다. 역선택에는 두 장치가 있다.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 발송**(signaling)은 정보가 많은 쪽이 자기 정보를 상대에게 알리는 행위로, 구직자의 학력·자격증이 사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선별**(screening)은 정보가 적은 쪽이 상대의 사적 정보를 끌어내는 장치로, 보험사 계약 메뉴와 은행 신용 심사가 사례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자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만들어 줄인다. 면책금(deductible)과 공동보험(coinsurance)이 대표 장치다. 애컬로프·스펜스·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고,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본 단원과 거의 같은 구조의 보험 시장 지문을 직접 출제했다.

본 단원 핵심 명제

2001 노벨경제학상 정보 비대칭 이론

정보 비대칭은 시장에 두 가지 실패를 만든다. 거래 이전의 역선택,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다.

보험 시장에서 두 문제는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로 나타난다. **정보 비대칭 → 가입 단계의 역선택 → 가입 후 도덕적 해이 → 시장 비효율**. 함정 단골은 두 가지다. 도덕적 해이가 거래 이전에 일어난다는 진술, 그리고 신호 발송과 선별의 주체를 바꾼 진술(정보 우위자가 선별, 정보 열위자가 신호 발송)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정보 비대칭

거래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02 레몬 시장

애컬로프 1970, 평균 가격 → 좋은 차 이탈 → 시장 붕괴.

03 역선택

거래 이전, 숨겨진 특성, 잘못된 상대를 고른다.

04 도덕적 해이

거래 이후, 숨겨진 행동, 가입 후 행동이 달라진다.

05 해결책

신호 발송·선별(역선택) / 면책금·공동보험(도덕적 해이).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시점 차이를 외우자

역선택은 거래 이전(사전적), 도덕적 해이는 거래 이후(사후적). 보기 사례가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 먼저 판별한다.

02

정보 종류 차이를 외우자

역선택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특성), 도덕적 해이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행동). 두 정보 종류가 핵심이다.

03

신호 발송 대 선별 주체

신호 발송은 정보 우위자(구직자·판매자), 선별은 정보 열위자(보험사·은행)가 쓴다. 주체를 바꾸면 함정이다.

04

2017 수능 기출 풀기

2017학년도 수능 보험 시장 지문이 본 단원과 거의 같은 구조다. 본문 학습 뒤 반드시 풀어 보자.

함께 볼 단원

보험 시장
2017 수능

본 단원의 보험 시장 정보 비대칭이 2017학년도 수능에 직접 출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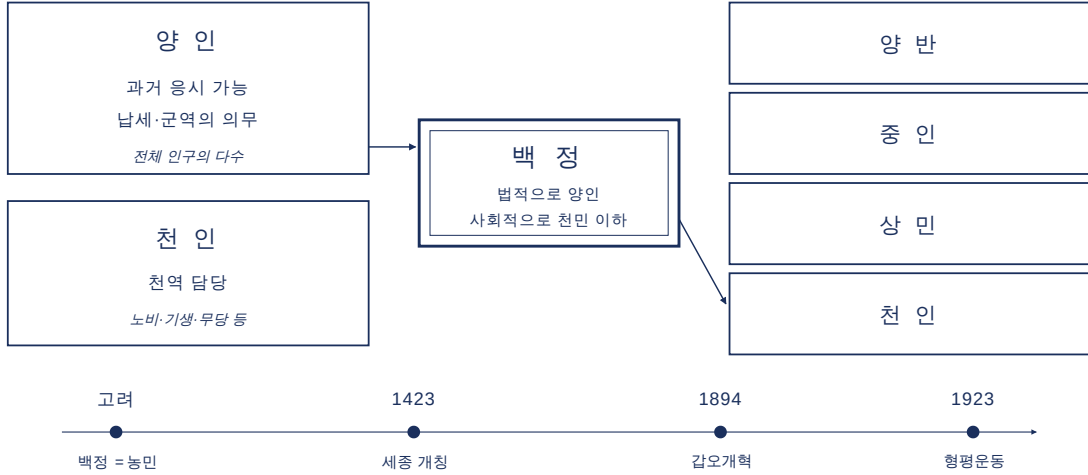
사회·문화 20강

법적 신분

경국대전의 양천제

사회적 신분

실제 사회의 네 층위



법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의 깊은 괴리

조선 시대 신분 제도와 백정

양천제·사회적 4층위·형평운동의 흐름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38	영역	사회·문화 / 역사·역사사회학
주제	양천제, 백정, 갑오개혁, 형평운동	연계	2024학년도 9월 모평 직접 출제



평등이 헌법에 적히기 130년 전, 신분은 무엇을 결정했을까.

01

신분이 한 사람의 길을 정하던 시대

양천제와 사회적 네 층위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불과 130여 년 전 조선 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다. 그 신분은 한 사람의 직업, 거주지, 혼인은 물론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까지 결정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은 집단이 백정이다. 본 단원은 조선의 법적 신분 체계인 양천제, 법과 사회의 괴리, 백정의 이중 지위,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23년 형평운동까지를 한 흐름으로 짚는다.

§ 01 양천제와 사회적 신분의 괴리 법과 사회의 거리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신분을 양인과 천인 둘로 나눴다. 이것이 **양천제**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속해 천역을 담당했다. 그런데 법전의 양천제와 실제 사회의 신분 질서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다. 본래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군역 면제 같은 세습적 특혜를 누리는 신분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중인·상민으로 다시 나뉘었다.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의 이분법이었지만, 실제로는 **양반·중인·상민·천인의 네 층위**가 사회를 움직였다. 이 괴리아말로 조선 신분 질서의 가장 깊은 모순이다.

법적 신분 (양천제)

두 신분의 이분법

경국대전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의 틀

양인은 과거 응시 자격을 가지되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고, 천인은 천역을 담당했다. 법은 사람을 둘로만 나눴다.

사회적 신분 (네 층위)

실제 작동한 질서

양반·중인·상민·천인의 위계

16세기 이후 양반이 세습 특권 집단으로 굳어지며, 양인이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했다. 법은 둘이라 했어도 사회는 넷으로 움직였다.

§ 02 백정 — 한 단어의 긴 역사 명칭의 변천

백정(白丁)이라는 말의 역사는 복잡하다. 본래 고려 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했다. 한자로 풀면 아무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양수척·화척·재인이라 불리는 집단이 따로 있었다. 유목민 출신으로 떠돌아다니며 도살업, 유기 제조와 판매, 사냥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1423년(세종 5년) 조선 정부는 이들을 정착시키고 일반 백성과 같이 대하겠다는 취지로 재인과 화척을 백정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백정이라는 말 자체가 도살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해 갔다.

백정이라는 말의 의미 변천

시기	가리키는 집단	사회적 위치
고려 시대	일반 농민(관직 없는 평민)	평범한 양인
고려~조선 초	양수척·화척·재인(유목민 출신)	차별받는 떠돌이 집단
1423 세종 개칭	양수척·화척·재인을 백정으로	명칭 변화, 차별 지속
조선 중·후기	도살업에 종사하는 천민	천민 이하 대우

명칭은 한 번 바뀌었지만,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평민을 뜻하던 백정이라는 말이 도살업 천민을 뜻하는 말로 굳어지는 흐름은, 명칭 변경이 차별 해소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국 사회사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02

차별의 모습과 두 번의 풀림

생활 전반의 차별·갑오개혁·형평운동

§ 03 백정에 대한 차별의 모습

제도와 문화의 결합

조선 시대 백정은 법적으로 천민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천민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차별은 생활 전반에 촘촘히 퍼져 있었다. 호적에 별도로 표기되어 일반 양인과 구별되었고, 의복도 엄격히 규제되어 명주·비단옷이나 갓·망건·가족신이 금지되었다. 거주지도 제한되어 일반 마을 안에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양인이나 양반과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해 백정끼리만 통혼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백정은 양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존댓말을 써야 했으며, 양인의 어린아이에게도 도련님이나 애기씨라는 호칭을 써야 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의 세습이었다. 백정의 자녀는 다시 백정이 되었고,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에 응시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옮길 길이 막혀 있었다. 도살업이 유교 사회에서 생명을 죽이는 직업으로 천시된 까닭에, 백정 차별은 제도와 문화가 결합된 깊은 모순이었다.

생활 전반에 퍼진 차별

영역	구체적 모습
호적·의복	별도 호적 표기, 명주·비단·갓·망건·가족신 금지, 패랭이만 가능
거주	일반 마을 안 거주 제한
혼인	양인·양반과 통혼 금지, 백정끼리만 통혼
호칭	양인의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과 도련님·애기씨 호칭
직업 세습	자녀도 백정, 과거 응시와 직업 전환의 길이 막힘

§ 04 갑오개혁과 형평운동

법의 풀림과 사회의 풀림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노비제가 공식 철폐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법적 신분제의 폐지가 곧 사회적 차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았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배제는 일제강점기까지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신현수(양반 출신 사회운동가)와 장지필·이학찬(백정 출신 지식인) 등이 **형평사**를 창립했다. 형평이란 저울이 평형을 이루듯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뜻이다. 형평사의 설립 목표는 세 가지였다.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장려가 그것이다. 형평사는 창립 후 1년 만에 전국 각 도에 지사와 분사가 세워질 만큼 빠르게 퍼졌고, 1935년까지 13년 동안 활동했다. 법의 풀림과 사회의 풀림 사이 30년의 거리가, 한 시대의 차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 준다.

1894 갑오개혁

법의 풀림

노비제 철폐, 법적 신분제 폐지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사회 깊은 곳의 멸시와 배제는 풀리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1923 형평운동

사회의 풀림

진주 형평사 창립, 13년간 활동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장려를 목표로 삼았다. 피차별 집단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한 근대적 사회 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03

조선 시대 신분 제도와 백정

§ 05 평가원 출제와 본 단원의 위치

출제 흐름

평가원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조선 시대 신분 제도를 (가)(나) 복합 지문으로 다뤘다. (가) 지문은 경국대전 체제의 양천제와 조선 후기의 노비 속량·유학 직역 증가를 다뤘다. (나) 지문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타난 도덕적 능력주의 기반 개혁론을 다뤘다. 12번부터 16번까지 다섯 문항이 출제되었다. 본 단원의 백정 자체는 이 기출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양천제와 천민 계층의 세부 구조라는 같은 맥락에 놓이며, 추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단원 핵심 명제

조선 신분제와 백정의 모순

법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이 갈라진 곳에서 백정의 모순적 지위가 만들어졌다. 1894년 법은 풀렸으나, 사회는 1923년에야 풀리기 시작했다.

본 단원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양천제(법적 이분법) → 양반·중인·상민·천인(사회적 4층위) → 백정의 이중 지위 → 1894 갑오개혁(법의 풀림) → 1923 형평운동(사회의 풀림). 함정 단골은 두 가지다. 첫째, 백정이 법적으로 천민이었다는 진술이다. 둘째, 갑오개혁이 사회적 차별까지 곧바로 없앴다는 진술이다.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양천제

경국대전의 법적 신분 — 양인(과거·의무)과 천인(천역)의 이분법.

02

사회적 4층위

양반·중인·상민·천인이 실제 사회 질서로 작동했다.

03

백정의 이중 지위

법적으로 양인이나 사회적으로 천민 이하 대우를 받았다.

04

명칭 변천

고려 백정은 농민, 1423년 양수척·화척을 백정으로 개칭, 도살업 천민으로 의미 변화.

05

법과 사회의 풀림

1894 갑오개혁이 법을, 1923 형평운동이 사회를 풀기 시작했다.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길

01

법과 사회의 구분

양천제(법적)와 양반·중인·상민·천인(사회적)을 구분하자. 두 구조의 괴리가 단원의 가장 큰 시험 포인트다.

02

백정 명칭 변천

고려 백정(농민) → 1423 양수척·화척 개칭 → 도살업 천민으로 의미 변화. 명칭이 차별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03

30년의 시간차 외우기

법적 해방(1894)과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1923) 사이 30년이 의미하는 바를 외워 두자.

04

2024 9월 모평 풀기

양천제·노비 속량·유형원·정약용을 다룬 5문항을 풀면, 동일 맥락의 백정 단원 출제에 대비할 수 있다.

함께 볼 단원

양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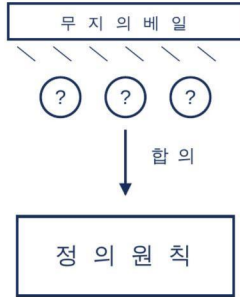
2024 9월 모평

양천제·노비 속량·유형원·정약용 개혁론을 다룬 평가원 직접 출제 기출이다.

사회·문화 21강

롤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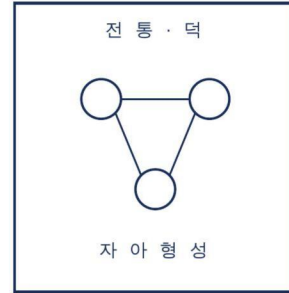
공정한 절차가 정의를 낳는다
원초적 상황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매 킨 타이 어

공동체가 자아와 정의를 빛낸다
공동체



공동체가 자아와 정의를 빛낸다

정의는 절차에서 오는가, 공동체에서 오는가

롤스의 정의론

절차적 정의와 공동체주의의 정면 충돌

출처	2027 수능특강 독서 p.25	영역	사회·문화 / 정치철학
주제	원초적 상황, 무지의 베일, 정의의 두 원칙, 매킨타이어의 비판, 공동체와 덕	연계	2026학년도 수능 인격론 비교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범 모델 비교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면, 어떤 사회 규칙에 합의하게 될까.

01

절차적 정의와 무지의 베일

롤스가 공정한 사회를 짜는 방식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케이크 자르기를 떠올려 보자.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되 자기 몫을 가장 마지막에 고른다면, 그 사람은 최대한 공평하게 자를 수밖에 없다. 절차 자체를 공정하게 짜면 그 절차에서 나온 결과도 공정해진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이 발상을 사회 전체로 끌어올린다. 영미권 철학자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정반대로 답한다. 정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 2027 수능특강 23강이 두 자세의 정면 충돌을 다룬다. 평가원이 복수 학자의 견해를 대비시키는 문항을 즐겨 내므로, 두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잡아 둘 필요가 있다.

§ 01 절차적 정의 — 케이크 자르기에서 출발하다 FOUNDATION

롤스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정의로운 결과를 직접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정한 절차는 짤 수 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그는 본다. 이것이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짜 맞추는 대신, 누가 보아도 공정한 절차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다.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자기 몫을 마지막에 고르기로 약속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스스로 공평하게 자른다. 절차 하나가 모두를 공정하게 만든다.

결과적 정의

결과를 직접 정한다
옳은 분배의 모습을 미리 그린다

"이만큼이 옳다"는 결과를 미리 정해 두고 거기에 맞게 분배한다. 그러나 누구의 기준이 옳은지 합의하기 어렵다. 모두가 다른 답을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의

절차를 공정하게 짤다
공정한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보아도 공정한 절차를 짜고, 그 절차에서 나온 결과를 정의롭다고 받아들인다. 롤스가 고른 길이다.

§ 02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 CORE DEVICE

그렇다면 어떻게 절차를 공정하게 짤까. 롤스가 고안한 장치가 **원초적 상황**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재산·능력·출신을 전혀 모르는 가상의 조건에서 사회의 규칙을 합의하는 자리다. 이 가림막을 **무지의 베일**이라 부른다. 자신이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모른 채 규칙을 정한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고를 수밖에 없다. 약자를 무시한 규칙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약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은 사람의 이기심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조차 공정한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베일이 없으면

강자에게 유리하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합의한다

부자는 세금을 깎는 규칙을, 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들고 나온다. 자기 이익을 알고 있으니 양보할 이유가 없다. 합의가 어렵고, 합의해도 약자가 손해를 본다.

베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공정하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합의한다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 약자를 무시한 규칙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자도 보호하는 규칙에 합의한다.

02

두 원칙과 매킨타이어의 반격

평등한 자유, 차등 원칙, 그리고 공동체

§ 03 정의의 두 원칙

PRINCIPLES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합의할 원칙으로 롤스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언론·집회·참정권 같은 기본적 자유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다. **제2원칙**은 두 부분이다.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은 사회의 직위와 직책이 능력만 같다면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고 본다. **차등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에게 최대 이익을 줄 때만 정당하다고 본다. 두 원칙의 순서가 결정적이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절대적으로 앞선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자유를 자유 아닌 것과 바꿀 수 없다.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 우선순위와 함께

순위	원칙	핵심 내용
1순위	평등한 자유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순위 ①	공정한 기회 균등	직위·직책이 능력만 같다면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
2순위 ②	차등 원칙	불평등은 최악자에게 최대 이익이 갈 때만 정당하다

§ 04 매킨타이어의 반격 - 공동체 없이 정의 없다

COUNTER

매킨타이어는 롤스의 발상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원초적 상황은 인간을 공동체에서 떼어 놓고 본다는 것. 사람은 가족·학교·지역·국가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 자아를 갖춘다. 공동체 없이는 자아도 없고, 자아 없이는 정의도 없다. 학교 학생회 규칙을 짜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롤스 식으로라면 학생들이 자기 학년·반·관계를 모른 채 규칙을 정해야 한다. 매킨타이어는 묻는다. 학교의 역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모른 채 정한 규칙이 정말 좋은 규칙일까. 매킨타이어에게 정의의 핵심은 **덕**의 실천이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반복해서 실천하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려는 성향, 곧 덕이 자란다. 자기실현은 타인과의 결합 속에서만 가능하다.

롤스의 자세

전통에서 분리한다

보편 원칙을 위해 베일을 씌운다

특정 공동체의 전통을 알면 그 전통에 유리한 규칙을 짤다. 그래서 전통을 가린다.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 정의 원칙을 끌어내려면 베일이 필요하다.

매킨타이어의 자세

전통 속에 머문다

공동체의 덕을 실천한다

전통 없는 자아는 없고, 자아 없는 정의는 없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함께 실천하면서 덕이 자란다. 보편 원칙보다 공동체 안의 좋은 삶이 정의의 본 모습이다.

03

두 자세의 대비, 그리고 한계

롤스 vs 매킨타이어 vs 노직의 삼각 구도

§ 05 대비의 축, 그리고 매킨타이어의 한계

SYNTHESIS

두 자세의 차이를 한눈에 잡자. 정의의 기반에서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과 덕**을 든다. 개인을 보는 시각에서 롤스는 공동체에서 분리한 합리적 개인을 상정하고,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자아를 상정한다. 다만 매킨타이어의 자세에도 한계가 있다.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비판적 사고와 진보가 막히고, 각 공동체의 가치가 모두 동등하다면 상대주의에 빠진다.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전통도 있기 때문이다. 수능특강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노직**도 함께 잡아 두자. 노직은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롤스(절차) vs 매킨타이어(공동체) vs 노직(소유)의 삼각 구도가 어떤 보기에든 통하는 틀이다.

롤스 정의론의 출발 명제 — 존 롤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

원초적 상황의 핵심은 공정함이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채로 규칙을 정한다. 그래야만 누구에게도 부당하지 않은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자유를 자유 아닌 것과 바꿀 수는 없다.

흐름은 이렇다. **무지의 베일(처지 모름) → 합리적 선택(공정한 원칙) → 정의의 두 원칙(평등한 자유 + 차등 원칙) → 절차적 정의의 실현**. 평가원 함정 단골은 다음이다.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틀림-절차의 공정을 추구한다), "매킨타이어는 보편적 정의 원칙을 추구한다"(틀림-공동체 안의 정의), "롤스에게 제2원칙이 제1원칙보다 우선한다"(틀림-제1이 절대 우선).

핵심 다섯 줄 요약

01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02 무지의 베일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규칙 합의, 원초적 상황의 핵심 장치

03 두 원칙

제1 평등한 자유 → 제2 공정한 기회 + 차등 원칙, 제1이 절대 우선

04 매킨타이어

공동체가 자아를 빚고 덕의 실천이 정의의 핵심, 전통 배제 반대

05 삼각 구도

롤스(절차) vs 매킨타이어(공동체) vs 노직(소유 권리)

수능 대비 공부 전략 네 가지 포인트

01 кей크 비유 외우기

자기 몫을 마지막에 고르는 사람이 가장 공평하게 자른다. 절차적 정의의 한 줄 요약이다.

02 두 원칙의 우선순위

제1원칙 > 제2원칙. 자유를 자유 아닌 것과 바꿀 수 없다. 우선순위 함정에 자주 걸린다.

03 키워드 두 묶음

롤스: 절차·합의·보편·원초적. 매킨타이어: 공동체·전통·덕·자아. 묶어서 외우자.

04 삼각 구도 잡기

롤스 vs 매킨타이어에 노직을 더하면 어떤 보기가 와도 대응할 수 있다.

함께 볼 단원

학자 비교 대비 구조 기출

2026학년도 수능 인격론 비교(칸트·스트로스·롱게네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 모델 비교 - 복수 학자 견해를 표로 정리하는 평가원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